



2025 어린이집 재무회계 매뉴얼





CONTENTS

CHAPTER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 | | |
|-------------------|---|
| 1. 어린이집 재무회계 목적 | 2 |
| 2.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본원칙 | 2 |
| 3. 회계연도 | 3 |

CHAPTER II

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리

- | | |
|------------|---|
| 1. 회계운영 | 6 |
| 2. 회계방법 | 7 |
| 3. 재무회계 처리 | 8 |

CHAPTER III

어린이집 재무회계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 | | |
|--------------|----|
| 1. 세입예산과목 구분 | 12 |
| 2. 세출예산과목 구분 | 46 |

CHAPTER IV

부록

- | | |
|----------------------|----|
| 어린이집 재무회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98 |
|----------------------|----|

[일러두기]

- 「어린이집 재무·회계 매뉴얼(이하 '매뉴얼」)은 투명한 재정운영 지원 및 회계역량 강화를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 본 매뉴얼은 어린이집에서 재무·회계 업무 처리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 운영의 기본원칙부터 세입·세출 예산과목별 설명과 다양한 사례 및 유의사항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 매뉴얼의 내용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이하 본문에서는 '규칙', 또는 '재무·회계규칙'으로 약칭 표기), 2025년 보육사업안내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 각 지자체에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는 특수사업에 대하여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과 2025년 보육사업안내의 일반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회계 기준(지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시·도 시·군·구에 위임된 회계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적용 가능합니다.
- 본 매뉴얼을 통해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업무를 처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CHAPTER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1. 어린이집 재무회계 목적
2.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본원칙
3. 회계연도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규칙 제 10조 3항 제2호 관련)

1. 어린이집 재무회계 목적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4항, 제34조제4항, 제45조제2항 및 제51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재무·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재무·회계, 후원금관리 및 회계감사의 명확성·공정성·투명성을 기함으로 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합리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2. 어린이집 재무회계 기본원칙

- ✓ 예산총계주의 원칙
- ✓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원칙
-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 회계연도 독립원칙
- ✓ 예산 및 결산 내역 공개원칙

● 예산총계주의 원칙

-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해야 함. 즉, 1회계연도 모든 수입은 세입, 모든 지출은 세출로 편성해야 함

● 수입의 직접사용 금지 원칙

-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세입처리하지 않고 직접 사용은 불가함
- 세입처리하는 관·항·목 기준에 따라 수입 결의함
- 어린이집은 현금을 직접 받아 사용하지 못하고 다만, 부모(보호자)의 사정에 의해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수납할 경우,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에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보육아동명의로 무통장 입금해야 함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 어린이집의 모든 지출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지출 시 관·항·목 기준에 맞게 지출결의 후 어린이집 명의의 운영비 통장을 통해 지출해야함

● 회계연도 독립원칙

-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함

● 예산 및 결산내역 공개원칙

- 어린이집 원장은 확정된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예산 개요를 해당 어린이집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해야함
- 공고는 「사회복지사업법」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게시하거나「영유아보육법」 제 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3. 회계연도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3조(회계연도) 개정('22.12.28.)

-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함
- 1회계연도에 속하는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함

2025
어린이집
재무회계
매뉴얼

CHAPTER

II

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리

- 1. 회계운영
- 2. 회계방법
- 3. 재무회계 처리

II

어린이집 재무회계 관리

(규칙 제 10조 3항 제2호 관련)

1. 회계운영

● 총칙

- 어린이집 회계연도: 매년 3. 1. ~ 익년도 2월 말일까지
- 출납기한: 1회계연도에 속하는 어린이집의 세입·세출의 출납사무는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완결해야 함

● 예산의 편성

- 예산총계주의 원칙: 1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하되,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정되어야 함

● 예산편성 절차



* 출처: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3

● 결산 절차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어린이집 원장	출납완료시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어린이집 원장	결산보고서 작성 시
↓		
이사회회의 결산보고서 의결	사회복지법인	해당 어린이집만
↓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 제출	어린이집 원장	다음년도 5. 31.까지
↓		
세입·세출 결산 개요를 당해 어린이집 게시판이나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공고	어린이집 원장	결산보고서 제출 후

* 출처: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5

2. 회계방법(수입 및 지출 기본원칙)

- 어린이집의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주요 항목별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함
- 회계는 단식부기에 의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하고, 수입 및 지출원인행위에 관한 사무를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음

* 보육교직원 위임 시, 별지 제21조(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제2항 위임장 서식 작성

- 어린이집의 모든 수입 및 지출 관리는 통장을 통해서 해야 함
 - 어린이집의 수입·지출만 관리하는 별도 어린이집 명의로 된 통장을 개설
 - ※ 모든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보조금 관리통장」과 「보조금 이외 관리통장」으로 구분하고 이외 보육교직원들에게 원천징수한 사회보장금과 세금을 보관할 수 있는 어린이집명의로 ‘세입·세출 외 통장’ 개설이 가능하고, 적립금 및 단기차입금 등 필요시 어린이집 명의로 별도 통장 개설이 가능
- 수입과 지출 행위 시에는 수입·지출 결의를 한 후 현금출납부, 총계정원장에 기록하고 청구서, 영수증, 지급내역서 등 관련 근거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함
-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생기는 보육료 수입 잉여금은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 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함
 -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운영 과정에서 잉여금이 발생할 경우 보육교사 등의 수당추가 지급 등에 사용 가능
 -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시설 운영에 따른 잉여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교직원 보수 상향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나, 총 잉여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음
 - ※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되 보육교직원의 보수를 심히 불리하게 책정해서는 안 됨
-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의무화
 - 어린이집은 매월 보조금 신청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형태와 내용에 따라 재무회계 관련 자료를 전송 또는 입력
 -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입력(전송)해야 하는 수입·지출 항목 등 재무회계자료는 동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시행
 -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회계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의 근로소득을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 함

3. 재무회계 처리

● 재무회계 절차 총괄표

	예산편성	▶	예산집행	▶	결산				
원칙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포함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예산의 전용 - 수입·지출의 관리는 예금통장에 의해 행함		세출예산의 이월				
관련 서류	- 사업계획서 - 세입·세출예산서 - 준예산 - 추가경정예산		<table><tr><th>장부</th><th>증빙서류</th></tr><tr><td> -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 봉급대장 - 보육료대장 - 비품관리대장 </td><td> - 계좌입금 증빙서류 - 수입·지출결의서 - 반납결의서 - 과목전용조서 - 예비비사용조서 </td></tr></table>	장부	증빙서류	-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 봉급대장 - 보육료대장 - 비품관리대장	- 계좌입금 증빙서류 - 수입·지출결의서 - 반납결의서 - 과목전용조서 - 예비비사용조서		- 세입·세출결산 총괄 설명 - 세입·세출 결산서 - 연도별 잔액증명 - 퇴직적립금 통장 사본 및 잔액 증명서
장부	증빙서류								
- 현금출납부 - 총계정원장 - 봉급대장 - 보육료대장 - 비품관리대장	- 계좌입금 증빙서류 - 수입·지출결의서 - 반납결의서 - 과목전용조서 - 예비비사용조서								
과정	- 예산편성 지침(2개월 전) - 예산안 제출(개시 5일전)		수입·지출 사무의 관리책임자 선정		제출(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기간: 매년 3월 1일 ~ 다음 연도 2월 말일

* 출처: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86

2025
어린이집
재무회계
매뉴얼

CHAPTER

III

어린이집 재무회계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 1. 세입 예산 과목 구분
- 2. 세출 예산 과목 구분

III

어린이집 재무회계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규칙 제 10조 3항 제2호 관련)

1. 세입 예산 과목 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 보육료	• 0~5세아, 장애아, 다문화·맞벌이가구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및 카드수수료 환급금 등
				112	부모부담 보육료	•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
02	수익자부담 수입	21	선택적 보육활동비	211	특별활동비	•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 비용
		22	기타 필요경비	221	기타 필요경비	• 보호자가 부담하는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급식비, 졸업앨범비, 행사비 등 기타 필요경비
03	보조금 및 지원금	31	인건비 보조금	311	인건비 보조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어린이집으로 지원되는 처우개선비 등 포함)
				321	기관보육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비용의 일정 부분을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32	운영보조금	322	연장보육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장보육에 대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323	공공형 운영비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 보조금
				324	그 밖의 지원금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급·간식 비 및 냉난방비, 누리과정운영비 등
		33	자본보조금	331	자본보조금	•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과목						내역
관		항		목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 법인, 단체, 개인 등 운영·경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42	차입금	421	단기차입금	• 회계연도 내 상환을 원칙으로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일시 차입한 단기차입금
				422	장기차입금	•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512	비지정후원금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후원 명목으로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 처분 수입	• 적립금 및 퇴직적립금에서 이전받은 금액
07	과년도 수입	71	과년도 수입	711	과년도 수입	•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수입	•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812	그 밖의 잡수입	• 차량·물품 등 어린이집 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 수입, 교육 외 수입(보증금 수입 등), 보육교사 실습비, 보험료 수령액 등
09	전년도 이월액	91	전년도 이월액	911	전년도 이월금	• 전년도 불용으로 이월된 금액
				912	전년도 이월사업비	•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1 보육료(01관) > 보육료(11항) > 정부지원 보육료(111목)

정부지원 보육료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1 보육료	11 보육료	111 정부지원 보육료	• 0세 540,000원 × 3명 × 12개월 • 1세 475,000원 × 5명 × 12개월 • 2세 394,000원 × 6명 × 12개월 • 3세 280,000원 × 15명 × 12개월 • 4세 280,000원 × 20명 × 12개월 • 5세 280,000원 × 20명 × 12개월 • 장애아 보육료 587,000원 × 3명 × 12개월 • 야간연장 보육료 4,000원 × 일 사용시간 × 월 사용일 수 × 아동수 × 개월수 • 시간제 보육료 3,000원 × 일 사용시간 × 월 사용일 수 × 아동수 × 개월수

- 0~5세아, 장애아, 다문화 가족 자녀 등에 지원되는 보육료

* 보육료: 보육교직원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 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이 포함

- 보육료 결제에 따른 카드수수료 환급금
- 정부지원 보육료 수납은 국민행복카드로 납부
- 부모 부담 보육료 수납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해 납부하도록 함
 - ※ 단, 현금으로 수납 시,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아동 명의로 개인별 무통장 입금('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87)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수납영수증(서식 II -3)을 발급해야 함. 국민행복카드 이용 시에는 카드발급 영수증 대체 가능, 국민행복카드 이외의 일반아동 보육료는 신용카드 및 금융기관을 통해 수납
 - ※ 부모가 일반아동의 보육료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희망하는 경우: 국민행복카드 가맹점인 어린이집에서는 이를 거부하지 못함(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 국민행복카드는 기발급 된 보육료지원카드 (아이행복카드 포함) 의미
- 야간연장 보육료의 경우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야간연장 보육서비스만 이용하는 아동은 정부 지원 불가

FAQ

Q1

국민행복카드 수수료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A 정부지원 보육료 예산 편성 시 국민행복카드 수수료를 포함하여 편성하기 때문에 정부지원 보육료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46]

Q2

시간제보육료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A 시간제 보육료 5,000원 중 3,000원은 정부지원 보육료, 부모가 결제하는 시간당 2,000원 경우 부모부담 보육료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본문) p.46]

Q3

야간연장 보육료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A 야간연장보육에 대한 보육료는 정부지원 보육료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89]

Q4

아동의 중간 퇴소로 인하여 일할 계산된 보육료가 수납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확한 금액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하나요?

A 매달 발생하는 금액의 산출기초는 선집행 금액에 대한 예산반영으로, 해당 내용의 경우 평균 금액을 반영하여 편성할 수 있습니다.

Q5

3월 신규입소가 확정된 아동의 학부모 해외 출장으로 인한 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현장체험학습, 가정학습 등) 결석할 경우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입소월에 1일 이상 출석한 경우,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아동이 해외로 출국하여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았으나 출석한 것으로 보고하는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야간연장 보육아동의 입·퇴소 시, 출석부를 작성하여 보육료를 청구 시 출결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함
- 전자출결시스템 태그를 어린이집에서 보관하며 아동 출결정보를 임의로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하여 지급(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급), 계속 재원 중인 아동은 출석일수를 3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지원(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료 및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수납 시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아래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함

✓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어린이집 폐쇄 등), 제45조의2 제1항(과징금 처분)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어린이집원장의 자격정지)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 처분)
-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90」

2 보육료(01관)› 보육료(11항)› 부모부담 보육료(112목)

부모부담 보육료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1 보육료	11 보육료	112 부모부담 보육료	• 아동 입·퇴소 출석 일수 미달 $80,000\text{원} \times 2\text{명} \times 2\text{개월}$ • 외국인아동 보육료(2세) $394,000\text{원} \times 1\text{명} \times 12\text{개월}$ • 외국인아동 연장보육료 $2,000\text{원} \times \text{일 사용시간} \times \text{월 사용일수} \times \text{아동수} \times \text{개월 수}$ • 시간제보육료 $2,000\text{원} \times \text{일 사용시간} \times \text{월 사용일수} \times \text{아동수} \times \text{개월 수}$ • 외국인 아동 시간제보육료 $5,000\text{원} \times \text{일 사용시간} \times \text{월 사용일수} \times \text{아동수} \times \text{개월 수}$

-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내에서 어린이집이 결정하여 보호자로부터 받는 보육료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만 해당
-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또는 자동이체, 계좌이체, 지로, 스쿨뱅킹 등을 통해 납부하도록 함
 - * 단, 현금으로 수납 시,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아동 명의로 개인별 무통장 입금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결정한 보육료 수납액과 부모 보육료의 차액을 부모로부터 수납(부모부담 보육료) 가능
 - ※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3세 이상)의 경우라도 법정저소득층과 장애 아동은 부모부담 없음
- 아동의 입·퇴소 월, 출석일수 등에 따른 부모부담 보육료 수납기준은 부모보육료의 지원기준을 준용하여 결정하되, 사전에 부모에게 고지하고 상호 합의해야 함

- 어린이집은 아동의 입·퇴소 월, 출석일수 미달 등의 사유로 부모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음

* 단, 이 경우 어린이집은 부모(보호자)에게 보육료 지원 및 보육료 수납기준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

- 유의사항 : 월 중 어린이집을 퇴소(예정 포함)하는 아동의 보육료 수납 시에는 반드시 자격변경신청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결과 해당 월의 15일 이내에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한 경우 부모 바우처로 보육료 결제를 하지 않도록 유의(해당 월 15일 이내 양육수당*으로 변경 신청한 아동의 보육료를 부모바우처로 결제 시 보육료 부정수급 대상이며, 해당 건은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

*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한 경우에는 각각 일할 결제 가능

FAQ

Q1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해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면 어떤 계정과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A 아동의 입·퇴소 월 출석일수 미달 등의 사유로 정부지원 보육료를 100%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금액을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습니다. 출석일수 부족으로 인한 부모부담금은 부모부담 보육료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90]

Q2

외국인 아동에 대한 시간제보육료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A 외국인 아동의 경우 보육료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모부담 보육료로 계정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278]

Q3

외국인 아동에 대한 연장보육료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A 외국인 아동의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 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을 경우, 부모부담 보육료로 계정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278]

유의사항

- '22년 1월 및 2월생이 상위반(누리과정 운영반)으로 편성되어 누리과정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누리과정 보육료는 3년을 초과하여 지원받을 수 없으므로 지원 기간 이후에는 보육료를 보호자가 부담하게 됨. 따라서 어린이집에서는 보호자에게 동 내용을 반드시 안내해야 함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64」

3 수익자부담 수입(02관)› 선택적 보육활동비(21항)› 특별활동비(211목)

특별활동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2 수익자 부담 수입	21 선택적 보육 활동비	211 특별 활동비	• 영어(2세) 18,000원 × 7명 × 12개월 • 체육(2세) 10,000원 × 7명 × 12개월 • 로봇과학(3세이상) 25,000원 × 55명 × 12개월 • 영어(3세이상) 20,000원 × 55명 × 12개월 • 체육(3세이상) 10,000원 × 55명 × 12개월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활동에 따른 수익자가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드는 교재교구 구입 및 외부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 장소를 어린이집 내부가 아닌 외부 공간(학원 등)을 이용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린이집의 보육 계획 일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특별활동으로 포함함
-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필요한 교재교구의 구입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의한 보육 프로그램 운영·현장 방문 학습 등은 특별활동에 해당하지 않음
 - ※ 해당 시·도지사는 지역적 여건(농어촌 등) 및 보호자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에 의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 활동에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으로 정할 수 있음
- 어린이집에서는 부모가 특별활동 업체에 직접 비용을 지불하도록 해서는 안 되며, 부모(보호자)가 희망할 경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수납해야 함
- 특별활동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월별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수납해야 함
- 특별활동비 수납 주기는 반드시 매월로 정해야 함

FAQ

Q1

특별활동비 잔액 14% 미만은 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특별활동비'는 세입(421목)과 세입(411목)을 직접 연계 지출하여야 하며, 특별활동 이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96]

Q2

특별활동비 지출 시 부모 수납분과 운영비에서 일부 부담한 교재비 등을 계정 분할하는 것과 관련해 결산 월(2월 말)에 계정 분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A 연도 중에 다양한 사유로 인하여 해당 월에 수납 금액이 세입 처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당월 필요경비를 다음 월에 납부하거나 해당 월의 지출분이 당월에 지출되지 못하는 경우). 따라서, 매월 당일 수납 금액이 당월에 세입 처리되는 경우라면 운영비 사용은 해당 계정으로 구분하되 위와 같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반기 또는 연도 말 결산 처리 시 해당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98]

Q3

특별활동비를 학부모 편의에 따라 학기별로 수납할 수 있나요?

A 특별활동비는 반드시 매월 수납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95]

Q4

특별활동비를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시 수수료 지원이 되나요?

A 정부지원 보육료는 수수료가 지원되나, 필요경비에 대한 수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필요경비에 대한 수수료는 어린이집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특별활동비 수납 시 수납주기와 한도 금액을 확인하여 수납한도액을 초과하여 수납하는 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특별활동은 24개월 이상의 아동에게 실시해야 하며,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의 아동에게 특별활동 제공 시 학부모 동의서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함
- 어린이집에서 부모에게 필요경비(특별활동비와 기타 필요경비)를 청구할 경우, 항목별로 금액을 명시해야 함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95」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98」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4 수익자부담 수입(02관)› 기타 필요경비(22항)› 기타 필요경비(221목)

기타 필요경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2	22	221	•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90,000원 × 1명 × 1회
수익자	기타	기타	• 입학준비금 90,000원 × 9명 × 1회
부담	필요	필요	• 체육복 재구입 25,000원 × 5명 × 1회
수입	경비	경비	• 전자태그구입(분실) 5,000원 × 3명 × 1회 • 차량운행비 30,000원 × 20명 × 12개월 • 현장학습비(장애아, 2세 이상) 50,000원 × 65명 × 4회 • 행사비(0세 이상) 80,000원 × 73명 × 1회 • 야간연장 석식 30,000원 × 5명 × 12개월 • 지자체 특성화비(2세 이상) 20,000원 × 62명 × 12개월

- 보육료에 포함되지 않는 현물의 구입 비용과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에 속하지 않는 현장학습 등에 드는 실비 성격의 수익자 부담 비용

- 입학준비금: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 등), 상해보험료, 전자출결 태그 비용
-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에 해당

※ 다만, 어린이집 내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은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학습비로 포함

- 차량운행비: 보호자의 요청에 따른 차량 운행 시 소요되는 실비

※ 차량운행 기사 인건비는 인건비(120항),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는 차량비(215목) 우선 집행

- 부모부담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회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그 외 보육료 등 어린이집 운영비로 부담하는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행사비(313목)에서 지출

* 다만, 생일은 영유아를 기준으로 1회를 의미

-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 연장보육료에는 급식·간식 비용 미포함(연장보육 시간에는 급식·간식 제공 의무 없음. 단,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급식·간식 제공 시 필요경비 수납 가능)
 - ※ 24시간 보육료에는 급식 비용 포함(아침, 저녁 급식비 필요경비 수납 불가)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필요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 기타 필요경비는 수납주기와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수납해야 함
- 보육료와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을 통합하여 수납하였을 경우, 이를 항목별로 분리 입력해야 함
- 보육료와 그밖의 필요경비 등을 최초로 수납 시 관할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 및 해당 어린이집의 필요경비 수납액 어린이집 게시, 영유아의 부모(보호자)에게 보육서비스의 내용,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의 수납목적 및 사용계획 등에 대해 설명하고 서면으로 안내해야 함

FAQ

Q1

기타 필요경비 중 입학금을 선수납 하였을 경우 입학준비금의 회계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A 신입원아의 입학준비금은 당해연도에 수납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 선수납하였을 경우 기타 필요경비(221목)로 세입 후 '23년 회계연도 세입 기타 필요경비(221목)로 예산을 이월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47]

Q2

전자출결 태그를 분실하여 재구매 시 지자체 수납 한도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학부모에게 수납해도 되나요?

A 분실에 따른 태그 재구매 수납 비용은 지자체 수납한도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태그 비용을 수납 시 기타 필요경비로 세입 처리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93, (부록) p.47]

유의사항

- 시·도 특성화 비용의 경우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영유아가 24개월 이상 영유아와 함께 보육(동일반)을 받는 경우에 한해 보호자 동의(요청)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실시할 수 있음
- 외부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시·도 특성화비로 지출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95, p.97」

5 보조금 및 지원금(03관) > 인건비 보조금(31항) > 인건비 보조금(311목)

인건비 보조금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3 보조금 및 지원금	31 인건비 보조금	311 인건비 보조금	• 연장전담교사인건비 1,100,000원 × 1명 × 12개월 • 보조교사 인건비 1,100,000원 × 1명 × 12개월 • 사용자부담금(보조, 연장전담교사) 61,640원 × 2명 × 12개월 • 조리사 인건비 600,000원 × 1명 × 12개월 • 장애아통합교사인건비 1,844,000원 × 1명 × 12개월 • 야간연장교사인건비 1,826,000원 × 1명 × 12개월 • 대체교사 96,500원 × 1명 × 10일 • 대체조리사 96,500원 × 1명 × 5일 • 시간제 담임교사(4호봉) 2,267,400원 × 1명 × 12개월 • 국민연금(시간제) 27,208,800원 × 1명 × 4.5% • 건강보험(시간제) 27,208,800원 × 1명 × 3.545% • 장기요양보험(시간제) 964,551원 × 1명 × 12.95% • 고용보험(시간제) 27,208,800원 × 1명 × 1.15% • 산재보험(시간제) 27,208,800원 × 1명 × 0.66% • 퇴직적립금(시간제) 27,208,800원 × 1명 × 1/12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
 -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아닌 어린이집 중 그 밖의 연장형 보육교사, 장애아 통합 교사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이 보조받은 인건비 지원금
- 매월 어린이집 원장이 시·군·구에 신청하여 수령하는 인건비 보조금
- 4대 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과 퇴직적립금 부담액을 포함한 금액 중 지원 비율에 따라 지원
 - 원장 80%, 영아교사 80%, 유아교사 30%, 조리원(조리사) 100%, 특수교사 80%, 치료사 100%
 - 그 밖의 연장형 보육교사 80%, 장애아통합보육교사 80%, 방과후 보육교사 50%

FAQ

Q1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 중인 경우 인건비 지원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시간제보육에 대한 인건비 지원은 독립반만 해당이 되며, 직전 1년(전년도 3월~당해연도 2월까지) 반당 월 평균 40시간 이상에 해당할 경우, 1년간 100% 지원이 됩니다. 하지만 40시간 미만 미만에 해당될 경우, 1년간 미지원됩니다. [관련근거: '25년 시간제보육 사업안내 p.46]

Q2

야간연장교사 인건비는 어떻게 편성해야 하나요?

A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은 호봉별 단가, 4대보험 중 사용자 부담분 및 퇴직적립금의 80%를 편성합니다.

(기관보육료 지원 어린이집)의 야간연장교사 인건비는 근무시간에 따라 2,435,000원(8시간 근무), 2,130,000원(7~7.5시간 근무), 1,826,000원(6~6.5시간)을 지원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360]

Q3

어린이집 직접 채용 대체교사 지원금은 어떤 항목인가요?

A 직접 채용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금은 인건비 보조금(311목)으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421]

유의사항

- 국공립·법인어린이집 등 인건비 지원 신청 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만큼 차감 후 지원되므로 보조금 신청 시 주의해야 함
- 방과후 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기준은 방과 후 보수교육과정(40시간 이상)을 이수한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경우에만 월 지급액의 50%를 지원하고 있으니 주의하여야 함. 또한, 장애아동 방과후 보육에 따른 인건비 지원은 월 지급액의 100%를 지원하나 보육교사는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보수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함. 단, 불가피하게 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내에 방과 후 및 장애아보육 직무교육과정 이수를 전제로 지원하니 주의해야 함

Q 지원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례

보조교사	- 교사 겸직 원장반의 담임교사 업무 수행 등 보육업무 전담 - 원장의 행정 업무 및 운전·취사 등 기타 업무 보조나 전담 -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이 보조교사로 근무
연장전담교사	연장보육과 관련된 업무 미수행, 기본반 아동의 하원 차량 동승 금지, 근무시간 미준수 등
비담임교사	- 비담임교사가 원장반의 보육업무 전담 - 어린이집 대표자 또는 원장이 비담임교사로 근무 - 원장 차량 운행 등 개인 비서 역할 수행 등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에 따른 민간 보조금으로 외부검증 확대에 따라 민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검증 대상이 보조금 총액 3억 이상에서 1억 이상으로 강화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339」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370」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423」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427」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430」
-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2

6 보조금 및 지원금(03관)› 운영 보조금(32항)› 기관보육료(321목)

기관보육료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3 보조금 및 지원금	32 운영 보조금	321 기관 보육료	• 0세 629,000원 × 3명 × 12개월 • 1세 342,000원 × 5명 × 12개월 • 2세 232,000원 × 6명 × 1개월 • 2세 232,000원 × 7명 × 11개월 • 장애아 686,000원 × 3명 × 12개월

● 지원대상: 정부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민간·가정·직장·부모협동)

-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는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포함
- 다만,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 장애아연장반은 제외(인건비 지원)

※ 지원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원받는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등, 영아전담, 장애아전문 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 중 고용보험기금으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거나,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 특히, 지자체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여성농업인센터에 기관보육료가 중복 지원되지 않도록 조치

(단위: 원)

연령	0세	1세	2세	장애아
기관보육료 (‘25년 기준)	629,000	342,000	232,000	686,000

🔍 기관보육료 지원 요건(아래 사항 모두 충족)

- ①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 ②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 원칙 포함)' 준수
- ③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고한 경우 회계보고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④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정지 중인 어린이집이 아닐 것

- 지원내용: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아동 및 장애아를 대상으로 보육비용의 일정부분을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 종전('08년 까지)의 영아기본보조금, '09~'19년까지의 기본보육료

- 기관보육료는 '표준보육비용'과 '부모부담 보육료' 간의 차액을 보전해주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

※ 기관보육료 = 표준보육비용 - 부모부담 보육료

- 기관보육료 산정 방식: (입·퇴소아동) 입소 또는 퇴소한 달의 보육료는 '일할계산'(출석일수가 0일인 경우 미지원)

- (입소 아동) 입소월에 1일 이상 출석한 경우, 입소일로부터 입소월 말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퇴소 아동) 퇴소월에 1일 이상 출석한 경우, 퇴소월 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보육료 지원

※ 단, 신학기(3월) 신규 입소의 경우, 공휴일로 인하여 신규 입소 가능일(2일)이 토요일인 경우, 4일(월요일) 입소한 아동의 입소일은 2일로 지정 가능

🗞 FAQ

Q1

2월분 기관보육료는 계정과목이 무엇인가요?

A 기관보육료(321목)는 매월 1일 0시(말일 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보육료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2월분 기관보육료의 경우 지원금 체계 방식에 따라 후불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기관보육료(321목)로 세입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374]

Q2

외국인 아동의 기관보육료는 지원이 되나요?

A 기관보육료는 인건비 지원 어린이집을 제외한 어린이집 중 0~2세 아동 또는 장애아(외국인 아동 포함)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지원이 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372]

Q3

영아반 개설(유지) 인센티브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A 기관 보육료(321목)입니다.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유의사항

- 민간·가정 어린이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시 전월 기관보육료가 휴지, 폐지된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으로 지원이 됨. 따라서 이전 민간·가정 운영 통장으로 지원된 전월 기관보육료가 개인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제2호(목적 외 사용 금지)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374」

7

보조금 및 지원금(03관) > 운영보조금(32항) > 연장보육료(322목)



기관보육료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3 보조금 및 지원금	32 운영 보조금	322 연장 보육료	• 0세반 $3,000\text{원} \times 2\text{시간} \times 20\text{일} \times 1\text{명} \times 12\text{개월}$ • 장애아 $3,000\text{원} \times 2\text{시간} \times 20\text{일} \times 1\text{명} \times 12\text{개월}$ • 영아반 $2,000\text{원} \times 2\text{시간} \times 20\text{일} \times 5\text{명} \times 12\text{개월}$ • 유아반 $1,000\text{원} \times 2\text{시간} \times 15\text{일} \times 10\text{명} \times 1\text{개월}$ • 유아반 $1,000\text{원} \times 2\text{시간} \times 20\text{일} \times 15\text{명} \times 11\text{개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연장보육에 대해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보조금
- 연장보육을 이용한 아동의 이용시간에 따라 시간당 단가 지원
 - ※ 연장반 미신청 아동이 간헐적으로 17시 이후 탄력편성 정원으로 이용 시에도 지원
- 전자출결시스템 상 17시 이후 하원한 아동을 대상으로, 매일 시·분 단위로 기록 및 매일 30분 단위로 계산하여 연장보육료 생성
- 연장보육료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 자동전자출결시스템을 설치·운영 중이며,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 정지 중이 아닌 어린이집

FAQ

Q1

2월분 연장보육료는 3월에 입금됩니다. 2월분 연장보육료의 항목은 무엇인가요?

A 연장보육료(322목)는 매월 1일 0시(말일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연장보육료가 생성됩니다. 따라서, 연장보육료의 경우 보조금 지원 방식에 따라 후불제로 예산을 편성하고 연장보육료(322목)로 세입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357]

Q2

외국인 아동의 연장보육료의 계정 과목은 무엇인가요?

A 외국인 아동은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아동의 연장보육료는 부모부담 보육료로 구분합니다. (단, 난민 및 아프간특별기여자는 예외적으로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대상 포함)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278]

Q3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의 연장보육료를 신청할 수 있나요?

A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연장보육료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유치원을 다니면서 유아학비를 받고 있거나 가정양육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면 대상에서 제외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279]

Q4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 했을 때 연장보육이 가능한가요?

A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하원한 아동이 학원 등을 다녀온 후 재등원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영유아의 의료기관 진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재등원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78]

유의사항

- 전자출결시스템 태그를 어린이집에서 보관하며 연장아동 출결정보를 임의로 등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연장보육 전담교사는 안정적인 연장 보육 운영을 위하여 연장반 운영시간(19:30)까지 근무해야 함

✓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17조(보육교직원의 배치),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제2호(목적 외 사용 금지)
- 「보조금 관리의 관한 법」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및 제33조(비용의 보조 등)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430」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8 보조금 및 지원금(03관) > 운영보조금(32항) > 공공형 운영비(323목)

공공형 운영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3 보조금 및 지원금	32 운영 보조금	323 공공형 운영비	• 보육교사 급여 상승분 400,000원 × 6명 × 12개월 • 교육·환경 개선비 15,000원 × 70명 × 12개월 • 유아반 운영비 600,000원 × 3반 × 12개월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형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운영 보조금
- 공공형어린이집으로 지정되어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지원금
- 어린이집의 교사 수, 반 수, 아동 현원 등을 토대로 운영비를 산정하고 지급

※ 동 기준으로 산정되는 지원금 외에 지자체에서 별도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 해당 지원금의 목적 등에 따라 세입과목 설정

(예시) 공공형 활성화비 → 그 밖의 지원금(324목), 조리사 지원금 → 인건비 보조금(311목) 등

FAQ

Q1

지자체로부터 공공형 활성화비를 지원받고 있는데 공공형 활성화비가 공공형 운영비(323목)에 해당하나요?

A 공공형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교사인건비, 유아반운영비, 교육·환경개선비를 말합니다. 공공형 활성화비는 일부 지자체가 특수시책으로 공공형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비용입니다. 공공형 활성화비의 경우 그 밖의 지원금(324목)으로 편성하도록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49]

유의사항

- 공공형어린이집은 보육교사 월 급여를 국공립어린이집 인건비 1호봉 이상으로 지급해야 함. 따라서 '25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1월부터 적용해야 함

✓ 관련규정

- 「'24년 공공형업무매뉴얼 p.43-44」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432」

9 보조금 및 지원금(03관) > 운영보조금(32항) > 그 밖의 지원금(324목)

그 밖의 지원금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3 보조금 및 지원금	32 운영 보조금	324 그 밖의 지원금	• 교재교구지원금 1,000,000원 × 1회 • 장애통합 교재교구지원금 49,000원 × 3명 × 12개월 • 누리과정 운영비 54,000원 × 55명 × 12개월 • 장애 통합 누리반운영비 106,000원 × 3명 × 12개월 • 급·간식 지원금 10,000원 × 73명 × 12개월 • 교사 급·간식비 지원금 25,000원 × 6명 × 12개월 • 보수교육 지원금 80,000원 × 2명 × 1회 • 승급교육 지원금 70,000원 × 2명 × 1회 •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금 11,000원 × 6대 × 12개월 • 냉난방 지원금 250,000원 × 2회 • 차량지원금 200,000원 × 12개월 • 야간연장 운영비 400,000원 × 1반 × 12개월 • 시간제보육 운영비 300,000원 × 1반 × 12개월 • 고용창출 장려금 600,000원 × 4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그 밖의 지원금
-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급식·간식비, 냉난방비, 누리과정 운영비, 시간제보육 운영비, 건강검진비, 교사 보수교육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지원금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FAQ

Q1

보수교육 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보수교육 지원금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A** 보수교육 지원금은 그 밖의 지원금으로 계정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49]

Q2

2025년 1월에 살균소독비 지원금 6개월분을 선지원 받았습니다(1월~6월분). 2025년 예산 편성 방법이 궁금합니다.**A** 일부 지자체에서 정부회계연도에 따라 연간 보조금을 어린이집 회계연도와 다르게 보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내용은 지자체 관련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2025년 보조금(어린이집 회계연도 기준)을 2024년 귀속기간에 지원 받았다면 해당 금액은 세입 예산 그 밖의 지원금(324목)으로 예산을 이월하여(입학금 선수납금과 동일하게) 세출 예산 수용비 및 수수료 (211목)로 지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Q3

지자체에서 미세먼지 알리미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아직 보조금이 입금되거나 지출된 것은 아니지만 보조금 지급이 확정입니다. 추경을 편성해야 할까요?**A** 확정된 보조금은 추경 예산에 반영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4]

Q4

외국인 아동 보육료를 지자체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A** 지자체로부터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그 밖의 지원금으로 계정 구분합니다.

유의사항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 2(사업주의 협조의무)에 따라 근로자에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기 때문에 국민연금 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은 코로나19 유급휴가에 대한 사업주 지원금은 그 밖의 지원금으로 구분해야 함

✓ 적용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의 2

10 보조금 및 지원금(03관) > 자본보조금(33항) > 자본 보조금(331목)

자본 보조금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3 보조금 및 지원금	33 자본 보조금	331 자본 보조금	• 기능보강 사업비 지원금 5,000,000원 × 1회 • 보존식 냉동고 지원금 700,000원 × 1대 • 열화상 카메라 지원금 2,000,000원 × 1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신·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성격의 보조금
- 보조금 성격이나 목적에 따라 세출예산 연계 편성
- 재산조성비(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자산취득비)로 세출예산 연계 편성

FAQ

Q1

어린이집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금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A 환경 개선 지원금은 자본보조금으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18]

Q2

보존식 냉동고 지원금을 지원받았습니다.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A 장비비 성격의 지원금은 자본보조금으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18]

유의사항

- 기능보강 사업비를 보조금 전용 통장으로 지원받았을 경우 보조금 전용 통장에 이자가 발생하게 됨. 이 경우 보조금의 이자를 운영비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보조금 반환)
- ✓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비용 및 보조금 반환명령)

11 전입금(04관)》전입금(41항)》전입금(411목)

전입금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4 전입금	41 전입금	411 전입금	- 재단전입 3,000,000원 × 1회 - 직장위탁 보육비용(3세) 140,000원 × 1명 × 12개월

- 어린이집 운영의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예: 인건비 등) 일부를 모 법인, 관련 단체, 대표자(원장 포함)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비용
- 전입금은 대상, 내역, 금액 등 용처가 명확해야 하며 시설운영을 위해 쓰여야 함
- 전입금은 상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점에서 차입금과 그 성격이 다름

* 단,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은 법인회계 전출금과 연계하여 지출 가능

FAQ

Q1

위탁보육비용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위탁보육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보육에 따른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분을 우선 회계처리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하도록 합니다.(다만, 전출금 충당은 금지) 따라서 예산 편성 시 위탁보육비용은 전액 전입금으로 세입 예산편성하고, 세출 필요경비 제출에서 위탁 아동 인원수를 포함하여 예산 편성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8]

유의사항

- 3월에 A아동의 위탁보육비용 140,000원이 수납됨. A아동이 3월에 납부해야 하는 필요경비는 150,000원으로 위탁보육비용을 제외한 10,000원을 수납하였음. 4월 이후부터는 매월 필요경비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50,000원으로 위탁보육비용의 차액이 발생함. 반기 정산 시 위탁보육료 총액이 필요경비 등 지출 총액을 상회하는 경우, 추가수납 금액(10,000원)은 위탁보육비용 반기 정산 시 부모(보호자)에게 반환해야 함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15」

위탁보육비용 지원 시설 특별활동비 예산 편성방법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2 수익자 부담	21 선택적 보육 활동비	211 특별 활동비	• 영어(2세)18,000원 × 7명 × 12개월 • 체육(2세)10,000원 × 7명 × 12개월 • 로봇과학(3세이상,위탁아동1명 제외) 25,000원 × 54명 × 12개월 • 영어(3세이상,위탁아동1명 제외)20,000원 × 54명 × 12개월 • 체육(3세이상,위탁아동1명 제외)10,000원 × 54명 × 12개월

위탁보육비용 지원 시설 특별활동비 지출 예산 편성방법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400 수익자 부담 경비	410 선택적 보육 활동비	411 특별 활동비 지출	• 영어(2세) 18,000원 × 7명 × 12개월 • 체육(2세) 10,000원 × 7명 × 12개월 • 로봇과학(3세이상,위탁아동1명 포함) 25,000원 × 55명 × 12개월 • 영어(3세이상,위탁아동1명 포함) 20,000원 × 55명 × 12개월 • 체육(3세이상,위탁아동1명 포함) 10,000원 × 55명 × 12개월

위탁보육비용 지원 시설 기타 필요경비 예산 편성방법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2 수익자 부담 수입	22 기타 필요 경비	221 기타 필요 경비	•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90,000원 × 1명 × 1회 • 입학준비금(위탁아동1명 제외) 90,000원 × 8명 × 1회 • 체육복 재구입 25,000원 × 5명 × 1회 • 전자태그구입(분실) 5,000원 × 3명 × 1회 • 차량운행비(위탁아동1명 제외) 30,000원 × 19명 × 12개월 • 현장학습비(위탁아동1명 제외) 50,000원 × 64명 × 4회 • 행사비(위탁아동1명 제외) 80,000원 × 72명 × 1회 • 야간연장 석식 30,000원 × 5명 × 12개월 • 지자체 특성화비(위탁아동1명 제외) 20,000원 × 61명 × 12개월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위탁보육비용 지원 시설 기타 필요경비 지출 예산 편성방법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400 수익자 부담 경비	420 기타 필요 경비	421 기타 필요 경비 지출	•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90,000원 × 1명 × 1회 • 입학준비금(위탁아동1명 포함) 90,000원 × 9명 × 1회 • 체육복 재구입 25,000원 × 5명 × 1회 • 전자태그구입(분실) 5,000원 × 3명 × 1회 • 차량운행비(위탁아동1명 포함) 30,000원 × 20명 × 12개월 • 현장학습비(위탁아동1명 포함) 50,000원 × 65명 × 4회 • 행사비(위탁아동1명 포함) 80,000원 × 73명 × 1회 • 야간연장 석식 30,000원 × 5명 × 12개월 • 지자체 특성화비(위탁아동1명 포함) 20,000원 × 62명 × 12개월

12 전입금(04관) > 차입금(42항) > 단기차입금(421목)

단기차입금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4 전입금	42 차입금	421 단기 차입금	• 단기차입금(○○은행) 2,000,000원 × 1회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일시적으로 차입한 단기차입금(회계연도 종료일까지 변제완료 원칙)
- 단기차입금은 인건비 지급 등 차입금의 용처가 명확해야 함
 - ※ 예를 들어 차입금은 세출예산에 계상되어져 있으나 보육료 등의 수납이 늦어져 잔액이 부족하여 집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경우를 말함
- 단기차입 한도액 : 당해 회계연도에 상환할 수 있는 차입금 범위 내에 차입 가능
- 단기차입금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을 원칙으로 함

- 다만,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이 어려운 경우 금융기관이 아닌 개인(단, 해당 어린이집의 대표자, 원장은 제외)으로부터도 차입 가능하나 개인 간 차입으로 인한 이자 지출 시 제1금융권 대출 금리를 준용하여 이자를 책정해야 함
- ※ 금융기관 이외에서 조달하는 경우 어린이집의 원장은 차입금의 액수와 용처, 계좌이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증빙자료가 있는 경우에 인정. 단, 어린이집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대출)』 개설을 통한 단기차입은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으로 인정 가능
- ※ 예산 편성 시, 단기차입금(421목) 세입과목과 단기차입금 상환(611목) 세출과목에 각각 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여 편성

FAQ

Q1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상황이나 비용이 부족한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해도 되나요?

A 단기차입금은 인건비 지급 등 차입금의 용처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출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보육료 등의 수납이 늦어져 잔액이 부족하여 집행을 할 수 없을 경우 일시적으로 차입하는 경우로, 대규모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운영비 부족의 경우 단기차입금으로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49-50]

유의사항

-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은 마이너스통장(단기차입금 통장)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원장이나 대표자로부터 단기차입금을 세입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0」

13 전입금(05관)› 차입금(42항)› 장기차입금(422목)

장기차입금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4 전입금	42 차입금	422 장기 차입금	시설 외벽공사를 위한 장기차입금 18,000,000원 × 1회

-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차입금
- 어린이집 운영에 불가피한 사유(천재지변 등)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상환 가능한 장기차입금
 - ※ 장기차입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조달을 원칙으로 하며,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대출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장기차입은 불가
 - ※ 토지, 건물 등 시설의 자산증식(신·증축)을 위한 목적으로의 장기차입은 불가
 - ※ 장기차입금은 어린이집 설치·인가 시 대표자의 토지·건물에 대한 부채액을 포함하여 50%로 제한 (임차건물의 경우 전세·월세 보증금을 자산으로 봄)
- 장기차입 시 차입금액·연간이자, 차입사유·용도 및 상환계획·방법 등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 필요
- 장기차입 시, 상환기간(거치기간 제외)은 5년 이내이며, 장기차입금은 총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를 원칙으로 함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5년 이상으로 상환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하여 상환기간 연장 가능
 - *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보육료(112목)+기본 보육료(321목)+연장보육료(322목)
 - * 예시) 상환기간 5년인 장기차입의 경우 차입액 = 당해연도 총 보육료 수입 × 5년 × 5%
 - ※ 예산 편성 시, 장기차입금(422목) 세입과목과 당해 상환하는 원금 및 이자에 대하여 장기차입금 상환 (612목) 세출과목에 각각 편성
- 어린이집에서 사전에 적립되어 있는 적립금이 있을 경우 차입을 통한 자금 조달보다 적립금을 우선적으로 사용

FAQ

Q1

장기차입금의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하여 지인을 통해 차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총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비용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장기차입금 관련 규정에 따르면 장기차입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차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부채 비율 50% 이내 포함 관리가 되어야 하므로 장기차입은 개인 간 거래가 적합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0-51]

유의사항

- 장기차입금은 단기차입금과 달리 사전에 지자체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장기차입금 관련 서류(지자체 보고 서류 등)를 시설 내 비치해 두어야 함)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0-51」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14 기부금(05관)》기부금(51항)》지정후원금(511목)

지정후원금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5 기부금	51 기부금	511 지정 후원금	00 기업 도서 후원금 2,000,000원 × 1회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목적 지정된 수입
 - 후원금 수입 및 지출 시 '후원금 관리대장'을 마련하여 입·출금 내역 관리
 - '후원금관리대장'에는 현금과 현물기부를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후원금 수입 시 후원일시, 후원자 및 지정후원금의 용도를 관리하도록 함
 - 후원금의 관리
 - 대표자(또는 원장)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후원금에 관한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함
-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FAQ

Q1

후원금은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지정후원금은 후원자가 지정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 시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편성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이상의 금액을 부모로부터 후원금 성격으로 수납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의 수납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및 같은 법 제58조(과태료)
-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1-52」

15 기부금(05관) > 기부금(51항) > 비지정후원금(512목)

비지정후원금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5 기부금	51 기부금	512 비지정 후원금	바자회 수익금 300,000원 × 1회

- 국내외 민간단체 및 개인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결연후원금·위문금·찬조금 중 후원 목적이 지정되지 아니한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지는 수입
- 후원자가 사용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후원금은 시설 운영비로 사용함
- 단, 업무추진비(220항), 부채상환 및 재산증식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하되 시설 운영에 필요한 집기, 장비 등은 구입 가능
- 후원금의 관리
 - 대표자(또는 원장)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할 때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FAQ

Q1

비지정후원금도 후원금 관리대장에 관리가 필요한가요?

- A** 비지정후원금도 대표자(또는 원장)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산보고서를 제출 시,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후원금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1-52)],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 제58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6조

유의사항

- 비지정 후원금의 경우 업무추진비(항)로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 적용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제45조(후원금의 관리)
-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1-52」

16 적립금(06관)› 적립금(61항)› 적립금처분수입(611목)

적립금 처분 수입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6 적립금	61 적립금	611 적립금 처분 수입	• 적립금 만기 환급금 20,248,600원 × 1회 •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 반환금(연장반전담교사) 956,850원 × 1회

- 세출예산 적립금(511목)의 사용을 위해 실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된 적립 및 적립기간 만기 도래에 따른 환급금
-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한 인출금 등
-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적립금 반환 등을 위한 환급금
- 어린이집 통장으로 입금된 적립금은 적립 목적(시설 개·보수 및 차량구입 등)에 따라 세출예산 시설비(711목), 시설장비 유지비(712목), 자산취득비(721목) 등에서 지출
- 근로자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142목)으로 지출

FAQ

Q1

적립금 만기 시 적립금 통장에서 직접 지출해도 되나요?

A 적립금 만기환급금이나 중도인출금의 경우 운영비 통장으로 세입 처리 후(적립금처분수입 (611목)) 사업계획서의 목적에 따라 세출 예산 편성 후 지출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0]

Q2

적립금으로 2년 만기 적금을 들었습니다. 만기가 되어 운영비 통장에 넣지 않고 이자를 포함한 새로운 예금에 가입하여 별도의 통장을 개설하고 관리해도 되나요?

A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 계획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지자체에 제출하고 연장 가능 여부를 확인 하도록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0]

유의사항

- 적립금의 중도인출금이나 만기환급금의 경우 반드시 운영비 통장으로 세입처리(적립금 처분 수입) 해야 함을 주의해야 함
- 별도 어린이집 명의의 퇴직금 통장으로 퇴직금을 적립하는 시설(개인 연금형 제외)은 퇴직금 지급 시 퇴직금 통장에서 직접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세입처리 적립금처분수입, 세출처리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2」

17 과년도 수입(07관) > 과년도 수입(71항) > 과년도 수입(711목)

과년도 수입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7 과년도 수입	71 과년도 수입	711 과년도 수입	• 2월분 보육료 미수납액(3세) 280,000원 × 1명 × 1개월 • 2월분 특별 활동비 미수납액 50,000원 × 1명 × 1개월 • 2월분 특성화비 미수납액 30,000원 × 1명 × 1개월 • 2월분 국민행복카드수수료 1,726원 × 1개월

- 전년도에 세입 결정된 수입이 당해 연도에 입금되어 수입으로 확정된 수입

※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입 등의 입금 지연으로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수입처리 된 경우

FAQ

Q1

2월분 국민행복카드 수수료가 3월 15일에 입금되었을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A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으로 과년도 수입으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19]

Q2

'25년 2월 보육료 결제가 늦어져 2월분 정부지원 보육료가 '25년 3월에 입금되었을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A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으로 과년도 수입으로 항목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19]

Q3

'25년 2월분 필요경비가 '25년 3월에 입금되었습니다. 어떤 계정과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A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으로 과년도 수입으로 항목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19]

유의사항

- 과년도 수입으로 예산 편성된 필요경비는 전년도 필요경비 정산에 따른 미수납 금액과 일치 되어야 함 (필요경비 수납대장 상 미납 금액)

18 잡수입(08관)› 잡수입(81항)› 이자수입(811목)

이자수입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8 잡수입	81 잡수입	811 이자 수입	• 운영비 통장 이자수입 5,460원 × 2회 • 4대 보험 통장(예수금통장) 이자수입 13,220원 × 1회 • 보조금 통장 이자수입 690원 × 1회

- 금융기관에 예치한 예금의 이자수입

FAQ

Q1

세입·세출 외 별도의 통장을 관리 중인 경우 해당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나요?

A 총계주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모든 수입과 지출은 해당연도 예산에 계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세출 외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는 연도 내에 운영비 통장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

유의사항

- 세입·세출 외 통장 및 보조금 통장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도 원 운영비 통장으로 세입 처리(이자수입)해야 함(보조금 통장의 이자는 보조금 반환 대상)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

19 잡수입(08관) > 잡수입(81항) > 그 밖의 잡수입(812목)

그 밖의 잡수입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8 잡수입	81 잡수입	812 그 밖의 잡수입	• 보육카드기금 634,000원 × 1회 • 보육통장카드기금 323,494원 × 1회 • 현금캐쉬백포인트환급금 1,000원 × 50회 • 보육실습생 실습비 150,000원 × 1명 × 1회 • 통학차량 매각 대금 4,500,000원 × 1회 • 안전공제 치료 환급금 150,000원 × 3회 • 화재 보험 만기 환급금(9월 예정) 2,315,800원 × 1회

- 차량·물품 등 어린이집 재산 매각수입, 변상금, 위약금수입, 교육 외 수입(보증금수입 등), 보육교사 실습비, 보험료 수령액 등

FAQ

Q1 보육실습생의 현장실습비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A 보육실습생의 현장실습비는 그 밖의 잡수입(812목)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Q2 물품 구입 후 품질로 인한 취소 처리된 비용이 입금되었습니다.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A 회계연도 내 입금 처리된 금액은 처음 지출된 과목에서 반납결의 하고, 연도가 전환되어 입금 처리된 경우는 그 밖의 잡수입(812목)으로 예산 편성 후 구분합니다.

Q3 캐쉬백 환급금이나 보육통장 적립기금, 보육카드 기금은 계정과목이 무엇인가요?
A 그 밖의 잡수입(812목)으로 구분합니다.

유의사항

-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19」

20 전년도 이월액(09관) > 전년도 이월액(91항) > 전년도 이월금(911목)

전년도 이월금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9 전년도 이월액	91 전년도 이월액	911 전년도 이월금	전년도 이월금(선수납 이월금 제외) 1,542,500원 × 1회

- 전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불용액)이 금년 회계연도로 이월된 금액
 - 운영비 통장의 전년도 결산 잔액 및 2월 말일 기준 잔액증명원이 일치하도록 어린이집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금 편성
 - 단, 입학준비금의 선 수납이 이루어졌을 경우 2월 말 통장 잔액에서 선 수납분을 제하고 계상
 - * 신입원아의 입학준비금은 당해연도에 수납해야 하나, 부득이하게 당해 회계연도 개시(3월) 전에 선 수납하였을 경우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 세입 후 '25년 회계연도로 이월하도록 함
 - * 예시) '25년 2월에 입학준비금을 선 수납한 경우 '24년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 세입 후, '25년 회계로 이월. 이월 시 “전년도 이월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기타 필요경비” 항목으로 계상(단, “선수납 이월”을 표기하여 관리)

FAQ

Q1

'25년 2월분 사회보험료를 '25년 3월에 지출하는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A 1회계연도에 속하는 법인 및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2월분 사회보험료는 출납 기한에 맞추어 2월 말까지 지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연도 안에 지출되지 못한 경우는 과년도 지출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 안내 (부록) p.5]

21 전년도 이월액(09관) > 전년도 이월액(91항) > 전년도 이월사업비(912목)

전년도 이월사업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09 전년도 이월액	91 전년도 이월액	912 전년도 이월 사업비	• 24년 공사 미불금 이월 사업비 6,560,000원 × 1회 • 2월분 사회보험료 미지출금 이월 사업비 3,335,740원 × 1회

-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FAQ

Q1

당초 2월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사 기간의 연장으로 2월 말에 공사대금을 지출하지 못하는 경우 2월 말 기준 통장에 남은 잔액 전액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세입 처리해도 되나요?

A 2월 말 통장 잔액에서 당해 회계연도에 지출되지 못한 공사대금을 제외한 금액만큼 전년도 이월금으로, 공사 미불금의 경우 세입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로 구분하고 세출은 과년도 지출로 공사대금 미불금을 연계 편성하도록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19]

유의사항

- 전년도 이월사업비(세입)로 예산이 이월된 후 과년도 지출(세출)로 비용이 발생할 경우 이사회 의결 및 시설 운영위원회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시설 운영위원회에 사전 보고한 후 법인 이사회의 의결)

적용법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7조(세출예산의 이월)

2. 세출예산과목 구분

과목						내역
관		항		목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11	원장급여	원장인건비 중 기본급 등
				112	원장수당	원장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20	보육 교직원 인건비	121	보육교직원급여	보육교직원 인건비 중 기본급 등
				122	보육교직원수당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과 제(諸)수당
		130	기타 인건비	131	기타 인건비	기타 일급 또는 단기 채용 임시·일용직 급여
		140	기관 부담금	141	법정부담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142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수수료, 구입약품, 치료비, 대관·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 등
				212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세금 및 공과금, 안전공제회비,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자동차세, 각종 보험료(자동차·화재 등), 전신·전화료(통신비) 등
				213	연료비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214	여비	국내·외 출장여비
				215	차량비	차량 관련 유류대, 정비유지비, 소모품 등
				216	복리후생비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서비스 지급비(교직원 건강검진비·피복비·치료비·급량비 등)
				217	기타 운영비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분류되지 않은 경비(건물임대료, 건물용자금 이자 등)
		220	업무 추진비	221	업무추진비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경비
				222	직책급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223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과목					내역	
관		항		목		
300	보육 활동비	310	기본 보육활동 비	311	교직원연수· 연구비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연수비 및 연구비
				312	교재·교구 구입비	보육 기자재, 도서 등 구입 및 제작비
				313	행사비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경비
				314	영유아복지비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비용(건강검진 비용 등)
				315	급식·간식 재료비	정규보육시간 내 제공되는 주·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400	수익자 부담 경비	410	선택적 보육 활동비	411	특별활동비 지출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420	기타 필요경비	421	기타 필요경비 지출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졸업앨범비, 기타 필요경비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기관운영 및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등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600	상환· 반환금	610	차입금 상환	611	단기 차입금 상환	단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12	장기 차입금 상환	장기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액
		620	반환금	621	보조금 반환금	정부보조금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622	보호자 반환금	보호자 부담비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623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과 연계하여 지출하는 법인회계로의 전출금
700	재산 조성비	710	시설비	711	시설비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비
				712	시설장비 유지비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의 유지를 위한 수선경비
		720	자산 구입비	721	자산취득비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노후 업무용차량 교체 등 차량구입비(차량할부금 포함), 그 외 자산 취득비
800	과년도 지출	810	과년도 지출	811	과년도 지출	과년도 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지출대 상 부도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정)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 단위 절사금 등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소요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1 인건비(100관) > 원장인건비(110항) > 원장급여(111목)

원장급여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11 원장 급여	• 원장급여 3,500,000원 × 12개월

● 원장에 대한 급여(기본급)

- 급여(기본급)에는 수당이 포함되지 않으며, 급여와 수당을 구분하여 편성
-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

※ 적용시기 : '21년 7월 1일부터 실시,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호봉 승급 시기 소급 적용 가능

FAQ

Q1

원장이나 보육교직원 급여의 추경 예산 증액이 가능한가요?

- A** 연도 중 증가된 보육료 수입은 증액 추경 절차를 통해 보육교직원 보수 상향 지급, 보육교직원 성과급 지급, 교재교구 구입, 어린이집 환경개선에 균형 있게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보육료 추가 수입금을 활용한 교직원 보수 추가 지급은 추가 수입금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기준 초과 보수는 원장, 보육교사 등 전체 교직원에게 형평성있게 지급해야 하며, 초과 보수에 대해서는 전액 시설 부담(교육부에서 지자체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와 별도 편성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85, p.333,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3]

유의사항

- 예산상 급여와 수당을 구분하여 편성하였을 경우, 봉급대장에도 예산 편성과 동일하게 급여와 수당의 명칭을 구분하여 기록하고 전표 입력 시에도 분할 전표(급여와 수당 구분)로 등록해야 함
- 예산에 편성된 원장급여와 봉급대장의 원장 기본급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매월 확인해야 함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9」

2 인건비(100관) > 원장인건비(110항) > 원장수당(112목)

원장수당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100 인건비	110 원장 인건비	112 원장 수당	• OO수당 200,000원 × 12개월 • 명절수당 100,000원 × 2회 • 휴가수당 100,000원 × 1회

● 원장에 대한 상여금과 제(諸)수당

- 세금 신고 및 사회보험 총액 신고 대상 항목이며, 직책급과 구분하여 관리되어야 함
- 수당 지급 시 '보급대장'에 예산과 동일한 수당의 명칭이 확인될 수 있도록 함
 - ※ 제수당은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내역(명칭·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 편성(운영위원회 보고)
 - ※ 원장의 직무수당은 직책급(222목)으로 편성

FAQ

Q1

원장의 수당 편성 시, 명칭 표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21년 보육사업안내 개정사항에 따르면 제수당의 내역(명칭·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 편성하고 운영위원회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의 직무수당은 직책급(222목)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되 수당 명칭은 직위와 직무에 적합한 수당 명칭을 고려해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혜택받도록 예산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 안내(부록) p.53]

Q2

대표자 겸 원장도 시간외 근무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A**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시행령 제34조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사업의 종류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리·감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시간외 근무수당(통상임금의 50% 가산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2528, 2005. 5. 9.) 여기서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라 함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사업주와 일체적인 입장에 있는 자를 말하는 바, 그 실제에 있어 과장, 부장, 소장 등의 명칭 여하에도 불구하고 노무관리방침 결정에 참여하거나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노무 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자기의 근로에 대하여 자유재량권을 가지고 출·퇴근에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유의사항

-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수당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또한 (통학차량) 운전수당 등 어린이집 원장의 전임 규정을 위배되는 명목의 수당이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204」

3 인건비(100관) > 보육교직원 인건비(120항) > 보육교직원 급여(121목)

보육교직원 급여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100 인건비	120 보육 교직원	121 보육 교직원 급여	• 주임교사 2,247,600원 × 1명 × 12개월 • 기본반 담임교사 2,237,800원 × 5명 × 12개월 • 시간제교사(보조) 2,267,400원 × 1명 × 12개월 • 야간연장교사(보조포함) 2,096,270원 × 1명 × 12개월 • 장애통합교사(보조포함) 2,237,800원 × 1명 × 12개월 • 누리보조교사 1,100,000원 × 1명 × 12개월 • 영아보조교사(보조) 1,100,000원 × 1명 × 12개월 • 연장전담교사(보조) 1,100,000원 × 1명 × 12개월 • 조리사(보조포함) 2,096,270원 × 1명 × 12개월 • 차량기사 2,096,270원 × 1명 × 12개월

● 보육교직원에 대한 급여(기본급)

– 호봉 승급은 매달 1일자로 시행

※ 적용시기 : '21년 7월 1일부터 실시,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는 호봉 승급 시기 소급 적용 가능

– 임신기·육아기·가족돌봄 단축근무자는 주 40시간 이상 근무 보육교직원과 동일하게 인정('25.1.1.~)

※ 인건비 지원 대상 교사는 호봉을 재확정한 당해 월부터 재확정된 호봉으로 인건비 지원

- 대상: 보육교사, 누리보조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보조교사, 육아휴직 대체교사, 출산휴가 대체교사, 조리원, 운전원, 기타 보육교직원(야간연장반 교사, 영양사 등)
- 조리원 또는 운전원의 경우 주당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도 '보육교직원 급여'로 편성

FAQ

Q1

교사의 탄력보육에 따른 수당은 어느 계정과목으로 편성해야 하나요?**A** 보육교직원 수당(122목)으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67]

Q2

육아기 단축근로자 급여 산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A** 단축된 근로시간만큼 월 급여액에 비례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예) 1호봉을 지급받던 교사가 육아기 단축근로 2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2,237,800(1호봉) \times 3/4 = 1,678,350원(급여 지급)$, 다만 퇴직금은 기존 퇴직금 적립
 [관련근거: 고용보험법 제73조의 2]

Q3

월급여형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6~6.5시간 기준 1,826,000원)받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 전액을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급여로 지급해야 하나요?

A 해당 금액은 야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월급여형) 지원 금액이며, 4대 보험 사용자부담금 및 퇴직적립금의 80%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야간연장 보육교사의 급여는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 지원되어야 하며, 퇴직적립금 적립, 4대보험 가입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인건비 지원 금액은 인건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반드시 보육교직원에게 교부해야 함
- 보육교직원의 급여는 근로계약서 소정 근로시간에 맞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지 확인해야 함
- 급여 지급 시 보육교직원에게 임금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함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에 부여해야 함(4시간 근로자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부여)
- ✓ 적용법령
 - 「근로기준법 제17조」
 - 「최저임금법 제5조」
 - 「근로기준법 제48조2항」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4 인건비(100관) > 보육교직원 인건비(120항) > 보육교직원 수당(122목)

☰ 보육교직원 수당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100 인건비	120 보육 교직원 인건비	122 보육 교직원 수당	• 주임수당 100,000원×1명 × 12개월 • ○○수당 50,000원×8명 × 12개월 • 명절수당 100,000원× 14명 × 2회 • 휴가수당 100,000원× 14명 × 1회

- 보육교직원에 대한 상여금과 제(諸)수당
 -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 시간외·야간·휴일 근무수당, 급식비 및 기타 수당 등
- 시·군·구에서 직접 교사 통장으로 입금하는 수당인 처우개선비, 누리과정 등의 수당은 어린이집 세입·세출 예산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별도 처리(비과세 수당)
- 제수당도 연말정산 시 보수총액신고 대상
 - ※ 근로기준법상 초과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한 시간당 금액의 1.5배 지급
 - ※ 제수당은 어린이집 상황에 따라 추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으며, 내역(명칭·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 편성(운영위원회 보고)
- 각 수당 내역에 따라 구분하여 편성

Ω FAQ

Q1

보육교직원에게 수시로 지급하는 수당도 소득세 신고 대상인가요?

A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제2호에 의한 비과세 수당을 제외하고는 과세 대상입니다.

Q2

시간외 근무수당의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A 통상 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관련근거: 근로기준법 제56조]

Q3

연차 미사용으로 연차수당 지급 시 급여에 합산해야 하나요?

A 연차수당은 보육교직원 수당으로 예산 편성, 집행합니다.

유의사항

- 기본반 담임교사가 연장반 전담교사를 겸임하는 경우 연장보육료의 일부를 처우개선에 사용해야 함
- 예산에 미편성된 수당이 지급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함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203」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431」

5 인건비(100관) > 기타 인건비(130항) > 기타 인건비(131목)

기타 인건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100 인건비	130 기타 인건비	131 기타 인건비	• 대체교사(보조) 96,500원 X 1명 X 10일 • 대체 조리사(보조) 96,500원 X 1명 X 5일

-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 대상: 대체교사, 대체 조리원, 청소용역, 김장보조 등
- 인건비는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함
 -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기타인건비 지급 시 계좌이체가 원칙이며, 일용근로자의 통장사본, 근무확인서, 봉급대장(급여명세서 또는 고용산재보험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지출결의
 - ※ 일용근로자는 통상 1개월 미만 고용한 자를 말함

FAQ

Q1

지자체로부터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수입 및 지출처리는 어떤 계정과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의 인건비를 지원받은 경우 인건비 보조금(311목)으로 수입 처리하고, 단기간(5일 이내) 채용한 임시 일용직의 인건비는 기타인건비(131목)로 구분하여 지출해야 합니다.

Q2

대체교사를 2일간을 고용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자체에 임면보고를 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은 직종,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군·구청장에게 임면보고를 해야 합니다.(대체교사, 보조교사, 누리과정 운영 도우미, 운전원, 단기간 근로자 등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임면 보고)

유의사항

-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일지라도 계속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무시간과 상관없이(임면보고) 보육교직원 급여로 예산 편성, 지출해야 함
- 육아휴직자의 대체교사는 통상 1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후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이므로 보육교직원 급여로 예산 편성, 지출해야 함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20」

6

인건비(100관) > 기관부담금(140항) > 법정부담금(141목)



법정부담금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100 인건비	140 기관 부담금	141 법정 부담금	• 국민연금 $390,067,320\text{원} \times 4.5\%$ • 건강보험 $390,067,320\text{원} \times 3.545\%$ • 장기요양보험 $13,827,886\text{원} \times 12.95\%$ • 고용보험 $340,567,320\text{원} \times 1.15\%$ • 산재보험 $340,567,320\text{원} \times 0.79\%$ • 기타종사자 고용보험 $1,447,500\text{원} \times 1.15\%$ • 기타종사자 산재보험 $1,447,500\text{원} \times 0.79\%$

-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법정부담금(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 개인별 급여총액 기준 적용 (급여총액 = 기본급+제수당+직책급)
- 어린이집에서 법정부담금 관리 시, 운영비 통장 외 사회보험비용 및 세금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할 수 있음

FAQ

Q1

교사가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자인 경우 법정부담금의 예산편성은 어떻게 하나요?

A 두루누리 사회보험지원사업의 보험료 지원대상자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액만큼 차감 후 지원되므로 법정부담금 예산 편성 시 두루누리 지원금에 대한 산출기초를 감액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339]

Q2

시간외 근무 등에 따른 수당 지급으로 매월 교사의 급여 지급액이 변동되는 경우 매번 급여변동 신고를 해야 하나요?

A 건강보험료는 연말정산을 통해 당해연도에 실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확정 정산한 다음 당해연도에 전년도 임금을 기준으로 납부한 보험료가 적을 경우추가 납부하여야 하므로 당해연도 중 급여가 인상된 경우 다음연도 4월분보험료 납부 시 일시에 정산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직장가입자 표준 보수월액 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급여변동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도 전년도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결정 고지한 보험료에 의하여 별도 연말 정산 절차 없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어린이집 운영 상황에 따라 급여변동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Q3

당일 담임교사가 아파서 대체교사를 채용하였습니다. 하루 근무할 경우에도 2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일급으로 지급하는 대체교사의 경우에도 2대 보험(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421]

Q4

대표자가 다른 보육교직원 업무를 겸직하지 않고, 급여 또한 지급하지 않습니다. 사회보험공단에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부과하고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대표자의 보험에 대한 회계 처리가 가능한가요?

A 어린이집 대표자의 경우 보육교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급여와 사회보험료도 모두 지급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3]

Q5

대표자 겸 원장이 근로복지공단 승인을 받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이런 경우, 어린이집 부담금을 회계처리 가능한가요?

A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4대보험 사용자부담금 지원은 국민연금법, 국민건강 보험법, 산재보험법, 고용보험법에 따른 4대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에게만 법정부담금 예산 지원이 가능하며,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는 예산 미지원 및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급 불가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은 임의가입 대상자임)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334]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유의사항

- 간헐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직책급도 4대 보험 총액신고에 포함해야 함
- 어린이집에서 직접 채용한 대체교사의 경우 1일만 근무하여도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함
-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334」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421」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3, 57」

7 인건비(100관) > 기관부담금(140항)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142목)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100 인건비	140 기관 부담금	142 퇴직금 및 퇴직 적립금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340,567,320\text{원} \times 1/12$ • 육아휴직자의 퇴직금 적립금 $186,490\text{원} \times 9\text{개월}$

- 보육교직원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1년 근무 시 1개월분 급여액)
- 1년 이상 근무한 보육교직원이나 1년 이상 근무할 보육교직원에 대해 퇴직급여를 적립하여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별도로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퇴직적립금은 어린이집에서 부담
- 어린이집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
 - ※ 변액상품, 펀드, 보험 등이 아닌 '퇴직연금' 및 '퇴직적립'으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대표자,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겸 보육교직원은 퇴직금적립 및 지원 대상이 아님. 단,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적립 가능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근로자*에 포함되는 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임
 - ※ 직업의 종류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대법원 2004다29736 등 참고)

*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 매 회계연도 결산보고 시(매년 5월 31일까지) 퇴직적립금 통장사본, 예금잔액증명서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적립현황을 시·군·구에 보고해야 함
- 퇴직금 계산은 퇴직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 평균 임금*으로 산정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 ※ 평균 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해당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이나 1년 미만 근속 근로자(근로계약 기간은 1년 이상)의 퇴직급여, 퇴직적립금의 관리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경우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 퇴직적립금 중 국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적립금처분 수입으로 (611목)으로 세입 처리 후 반환해야 함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이 아닌 근로자)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자가 퇴직한 어린이집은 해당 근로자의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고 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적립금처분수입(611목)으로 세입처리 후 타 목으로 재편성해야 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거 퇴직금 중간정산 불가함. 다만 법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가능
 - 대상: 모든 보육교직원(일용잡급, 대표자 겸 원장 제외)
 - 산출근거: 보육교직원 급여(121목) + 보육교직원 수당(122목) × 1/12
 - ※ 고용원장일 경우에는 [원장급여(111목)+원장수당(112목)+직책급(222목)] × 1/12로 산정

FAQ

Q1

대표자 겸 원장인 경우 민간어린이집 원장도 퇴직금을 적립할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대표자, 대표자 겸 원장, 대표자 겸 보육교직원은 인건비 지원을 통한 퇴직급여·퇴직적립금의 적립·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콜센터 1350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333]

Q2

3년 근무 교사가 직위 변경으로 3월부터 4월 중순까지 보조교사로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퇴직금 한 달 15일분을 반납해야 하나요?

A 담임교사로 2년 근무 후 보조교사로 직위 변경되어 근무한 경우는 계속 근무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 반납 대상이 아닙니다.

Q3

교직원 수당 중에 고정 수당이 아닌 명절, 휴가, 교통비 등에 대해서도 퇴직적립금으로 산정해야 하나요?

A 퇴직금은 평균 임금을 기준 하는 바, 해당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유의사항

- 연금형 가입을 위한 퇴직금 유형 전환 시 기존의 적립했던 어린이집 명의의 퇴직금 통장에서 퇴직금을 인출하여 운영비 통장에 세입 처리 후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으로 지출해야 함(퇴직금 통장 직접 지출 금지)
- 육아휴직자의 경우 급여를 지급받지 않지만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상태로 퇴직연금에 가입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퇴직적립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함
- 육아기 단축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됨. 따라서 육아기 단축근로 전 기존의 정상적인 퇴직금을 적립해야 함

✔ 관련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3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2」

8 운영비(200관) 관리운영비(210항) 수용비 및 수수료(211목)

수용비 및 수수료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1 수용비 및 수수료	• 방역소독비 50,000원 x 12개월 • 우편요금 5,500원 x 6회 • 보육교직원 도서구입비 100,000원 x 6회 • 사무용품비 100,000원 x 6회 • 약품구입비 및 치료비 50,000원 x 6회 • 전자출결시스템 관리비 22,000원 x 12개월 • 협회비 200,000원 x 1회 • 공기청정기렌탈료(보조포함) 33,000원 x 6대 x 12개월 • 퇴직연금수수료 5,680원 x 12개월

- 소모품 및 집기 구입비, 구급약품, 각종 사무용 및 교구 비품의 수선비, 대관·비품대여료
- 공고료, 우편료 등 각종 수수료, 인쇄비, 홍보물, 도서구입비 등
- 소모성 물품 구입은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부분에 한정 사용
- 협회비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협회비이며 과도한 지출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FAQ

Q1 어린이집에서 아동이 다쳤을 경우 안전공제회에서 지급받기 전 사용한 병원비의 지출비용은 어느 계정과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A 수용비 및 수수료(211목)입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20]

Q2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이 초과 집행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추경 예산을 통해 추가 예산을 편성하신 후 집행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4]

Q3 보육실 관리 부주의로 일부 모서리 보호대가 파손되었습니다. 모서리 보호대의 교체 비용은 계정 과목이 무엇인가요?

A 모서리 보호대는 소모성 물품으로 수용비 및 수수료 구분이 적절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p.20, 53]

Q4

통학차량의 차량점검 수수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인가요?

A 수송비 및 수수료(211목) 입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20, 53]

유의사항

- 사적용도의 개인 물품의 구입비용을 어린이집 운영비로 처리하는 등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퇴직연금 지출 시 연금수수료가 퇴직금으로 구분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결산총괄 설명표 작성 시 금액 불일치)

✓ 관련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목적외 사용금지)」

9

운영비(200관) > 관리운영비(210항)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212목)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2 공공 요금 및 제세 공과금	• 전화요금 60,000원 x 12개월 • 전기요금(보조포함) 120,000원 x 12개월 • 전기요금(시간제) 20,000원 x 1반 x 12개월 • 상·하수도요금 55,000원 x 6회 • 도시가스요금(보조포함) 150,000원 x 12개월 • 안전공제회비 4,890원 x 73명 • 안전공제회비(시간제) 4,890원 x 3명 • 통학차량자동차세 320,000원 x 1회 • 통학차량 보험료 1,500,000원 x 1대 x 1회

- 세금 및 공과금(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 자동차세, 보험료, 안전공제회비 및 통신비 등
 - 전신전화료 중 휴대폰도 이용료 지원
 - 어린이집 회계에서 월 이용료를 지출할 수 있는 휴대폰은 별도로 기기를 구매(자산취득 또는 자부담)하여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로 제한함
- ※ 자산취득비(721목)로 휴대폰 구매 시, 어린이집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 ※ 상품구매 등 소액결제료를 월 이용료에 포함하여 지출 불가

- 보험료는 보육사업안내 본문 ‘II. 어린이집의 운영 <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 바. 보험가입’의 1)~3) 보험을 가입한 경우
 - 보험료 전액(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의 보험료 포함)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지출하되 만기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매년 결산 시 참고 서식(적립보험료 결산보고)에 따라 적립보험료 적립액 등을 지자체에 보고하고 만기 환급금 수령 시 반드시 시설 시설회계(그 밖의 잡수입)로 세입처리 해야 함
 - * 보육사업안내 본문 ‘II. 어린이집의 운영 < 1. 어린이집 운영 일반원칙 < 바. 보험가입’ 의 1)~3) 보험이 아닌 적립금 목적의 보험은 부록 ‘적립금’ 부분 참고

🔍 적립보험료 결산보고

구분	• 만기일(예정): • 만기환급 예정액: • 보험가입 기간:			
	전 회계연도 적립보험료(A)	당 회계연도 적립보험료(B)	인출액(C)	누적 적립보험료(D) (A+B-C)
적립보험료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212목)으로 실제 집행된 적립금 누계액 기재(비적립 순수보험료는 제외)

🗨️ FAQ

- Q1** 휴대폰 공기계를 선물로 받았는데 이용료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 전신전화료 중 업무 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경우 이용료를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개인휴대폰과 업무용 휴대폰 혼용 사용 시 이용요금 지출 불가)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4]
- Q2** 어린이집에서 전용으로 사용하는 휴대폰을 구입 시 어린이집 명의로 구입이 불가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법인 외 어린이집은 어린이집 명의로 구입이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어린이집 명의를 부기로 넣어 청구서를 발급받고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관리해야 합니다. 단, 업무용 휴대폰을 개인용도로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Q3** 통학차량의 차량보험료, 취득세 및 등록세는 차량비로 구분하나요?
- A**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212목)으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4]

유의사항

- 공과금 지출 시 가산세나 연체료가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어린이집 운영비로 휴대폰 요금을 지출할 시 상품구매 등 소액결제 금액이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

- 시설의 지도·감독청인 시·도 및 시·군·구는 해당 어린이집이 의무 가입해야 하는 보험과 관련하여 소멸식 상품으로 가입하도록 관리해 나가야됨
 - 만기환급금이 있는 상품을 가입한 경우라면 어린이집이 그 만기환급금 수령 후 시설 회계로 반드시 세입 (그 밖의 잡수입) 처리하도록 관리 감독 필요
 - ※ 교직원 책임·상해보험도 만기환급형 상품일 경우 수령 후 시설회계로 세입 처리함

✔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목적 외 사용금지)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82」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4」

10 운영비(200관) > 관리운영비(210항) > 연료비(213목)

☰ 연료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3 연료비	• 보일러 연료비 320,000원 × 6개월 • LPG 가스요금 53,000원 × 12개월

- 보일러 및 난방시설 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LPG)등

🔗 FAQ

Q1

지자체에서 냉난방비를 지원받아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한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A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한 경우, 공공요금 및 체세공과금(212목)으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4]

11 운영비(200관) > 관리운영비(210항) > 여비(214목)

여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4 여비	• 관내여비(4시간미만) 10,000원 × 5회 × 12개월 • 관외여비(4시간이상) 20,000원 × 2회 × 12개월

- 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직원의 국내 출장여비 및 국외 출장여비
 - (국내 출장여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이전비, 가족여비, 준비금으로는 지출할 수 없음)
 - (국외 출장여비) 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준비(이전비, 가족여비로는 지출할 수 없음)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자체(시·도)에서 개별 지자체의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함
- 지자체에서 별도 기준을 정하지 아니할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관련 사항을 준용함
 - * 보육교직원이 출장 시, 자기차량을 이용한 경우 교통비에 상응하여 유류대 지급 가능(이 경우 출장명령서, 복명서, 통행료, 영수증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필요)

FAQ

Q1

담임교사가 시청으로 공문 발송차 출장을 나갔습니다. 자기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시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나요? 관련 증빙서류는 무엇인가요?

A 지자체 여비 기준을 준용하거나 별도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도록 합니다. 또한, 증빙서류는 출장명령서, 복명서, 통행료 영수증, 근무상황일지 등을 증빙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5]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의 출장여비 지급 시 근무상황부 출장 내역과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함
-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후 여비 지급 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지출이 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함
-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5」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개정 2023.3.2.>

12 운영비(200관) > 관리운영비(210항) > 차량비(215목)

차량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5 차량비	- 차량 유류비(보조포함) 220,000원 × 12개월 - 차량 정비유지비 50,000원 × 12개월

-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의 유류대, 차량정비유지비, 차량소모품비로 지출
- '기타 필요경비'의 차량운행비 수납액은 기타 필요경비 지출에서 별도 지출 처리
- 어린이집 통학용 차량에 한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허위로 지출 불가
- 원장, 보육교직원 등의 개인용 차량유지비로는 지출 불가
- 어린이집 명의 통학차량 또는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맺은 차량 여부에 따라 차량비를 구분하여 처리

FAQ

Q1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지입차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입차 계약 시 차량사용료와 기사인건비를 포함하여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지입차량의 기사 인건비는 보육교직원 급여인가요?

A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송 계약이 이루어진 비용의 경우 차량비(215목)으로 지출 합니다.

Q2

통학차량 보험료는 차량비로 구분하나요?

A 통학차량의 보험료는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212목)으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4]

유의사항

- 통학차량 외 개인 주유 비용이 차량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함
-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이용하여 출장 시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여 여비 지급 시 지출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20」
-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2] <개정 2023.3.2.>

13 운영비(200관) > 관리운영비(210항) > 복리후생비(216목)

복리후생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6 복리 후생비	• 보육교직원 치료비 100,000원 × 4회 • 보육교직원 급량비 10,000원 × 10명 × 12개월 • 보육교직원 단합대회 300,000원 × 1회 • 보육교직원 피복비 50,000원 × 15명 × 1회

- 보육교직원의 건강검진비, 급량비, 치료비, 보육교직원 피복비 등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 급량비는 시간외 근무 시 석식 제공 경비
 - ※ 급량비와 보육교직원 격려를 위한 회식비는 성격에 따라 계정과목 구분 필요
- 복리후생비는 모든 보육교직원에게 형평성 있게 지출하도록 함

FAQ

- Q1** 보육교직원에게 명절에 지급되는 선물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A 현물성으로 지급되는 서비스 개념의 지출은 복리후생비로 구분하고 현금성 지급은 보육교직원 수당으로 구분하도록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20]
- Q2** 예산서에 보육교직원 수당을 복리후생비로 편성하였으면 어떻게 수정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수입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하므로 이때, 수정이 필요한 계정과목에 대해 예산을 재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Q3** 식단표 외 교사들의 별도 반찬을 위한 식재료 구입비의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A 급·간식 재료비는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주식과 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로, 식단에 없는 식재료를 보육교직원을 위해 별도 구입하였다면 복리후생비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개인적인 용도의 구입은 회계처리가 불가합니다.

유의사항

-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성 물품 구입의 지출 시 명확한 증빙 자료를 구비해야 함.

14 운영비(200관) > 관리운영비(210항) > 기타운영비(217목)

기타운영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10 관리 운영비	217 기타 운영비	건물 용자금의 이자 90,000,000원 × 2.6%

-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한 경비
- 기타운영비는 기타 관항목에 포함하여 지출할 수 없는 제반경비를 말함
- 기타운영비 항목으로 건물 임대료 또는 건물 용자금의 이자 등을 지출할 수 있음
- 기타운영비 중 건물임대료는 주변의 평균 임대료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함
- 건물 용자금에 대한 이자는 설치인가 시 발생한 이자에 한하여 지급(대표자 변경(인가)시에는 최초 설치인가 시에 발생한 이자에 한해 인정)
 - 건물 용자금을 중도 상환한 경우 잔여액에 대한 이자에 한해 지급 가능
 - 건물 용자금 대출 은행을 중도 변경하는 경우, 설치 인가 시 발생한 용자금으로서 대출은행 변경 시점의 미상환액 규모에 한하며, 동 규모 초과분에 대한 이자는 시설 회계로 지출 불가

17. 3. 1 시행된 건물용자금 이자 지급 규정의 적용례

1. '17. 3. 1 이후 발생한 건물용자금의 이자에 한하여 적용하며, '17. 2. 28 이전 발생한 건물용자금의 이자는 종전('17. 2. 28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에 의한 건물용자금의 이자는 지출 가능하다.
 -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으로 어린이집을 이전하는 경우
 - ② 법령, 조례·규칙 또는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의 설치·운영·보존·관리·안전 등에 관한 제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을 이전하거나 신·증축하는 경우
 - ③ 어린이집 운영의 고정비용 절감을 위해 임차시설을 자가 전환한 것으로 최근 1년간 임대료 지출 월평균액보다 건물용자금 이자 월지출액이 적은 경우

- 기타운영비는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현재 보육아동에 대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총 보육료 수입*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해야 함

* 총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보육료(112목)+기관보육료(321목)+연장보육료(322목)

*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상 '보육료 수입'은 정부지원보육료(111목)와 부모부담보육료(112목)를 합산한 금액이며, 기관보육료 등 운영보조금(32항)은 포함되지 않음

※ 기타운영비 지출 시,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상환(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합이 총 보육료 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FAQ

Q1

개원 시 어린이집 담보대출을 운영비 통장에서 지출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전액 상환하였습니다. 이후 추가 대출로 발생한 이자의 경우 기타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시설회계 예산과목 구분에 따르면 기타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은 설치·인가시 건물 용자금에 대한 이자로 대출 상환 후 추가 대출건에 대하여는 기타운영비로 회계처리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5]

Q2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계산 시 총 보육료는 무엇인가요?

A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산정기준이 되는 시도별 공동주택 관리준칙 상 '보육료 수입'은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보육료(112목)를 합산한 금액이며, 기관보육료 등 운영비 보조금(32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6]

유의사항

- 소액이라도 건물용자금의 원금이 어린이집 운영비(세출예산)에서 지출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5-56」

15 운영비(200관) > 업무추진비(220항) > 업무추진비(221목)

업무추진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20 업무 추진비	221 업무 추진비	• 불우이웃돕기 100,000원 × 1회 • 보육교직원 경·조사비 50,000원 × 4회 • 유관기관방문 50,000원 × 5회

- 업무추진비는 어린이집을 대표하여 행하는 보육교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및 업무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 등에 지출(다만, 비공식적인 섭외, 접대 등은 제한)
 - 어린이집 원장 개인의 경조사비 등 개인용도 사용은 불가
 - 노인정 방문, 불우이웃돕기 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된 간접행사비에 지출
- 시·군·구에서는 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추진비를 합리적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지도
 - ※ 유흥,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도 감독하되,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 지출은 용처가 명확한 경우에 적극적으로 인정

유의사항

- 공적 업무 외, 비용이 업무추진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6」

16 운영비(200관) > 업무추진비(220항) > 직책급(222목)

직책급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20 업무 추진비	222 직책급	원장 직책급 400,000원 × 12개월

- 시군구는 어린이집의 직책급이 과도하게 지출되지 않도록 지도
 - 직책급은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로 어린이집 원장의 직책수당을 의미하며,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제수당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임
 -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 영수증 처리는 하지 않아도 되며, 4대보험, 퇴직금 등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 시도 및 시군구는 직책급의 합리적 편성을 위해, 직책급 편성기준을 정할 수 있음
- ※ 직책급은 금액을 반드시 정하여 예산 편성(운영위원회 보고)

FAQ

Q1 직책급이 왜 과세대상인가요?

A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4대보험 총액신고, 고용원장의 경우 4대보험 총액 신고 및 퇴직금 등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7]

유의사항

- 예산편성 금액과 일치하도록 직책급 지급 관리가 필요함
- 직책급이 4대보험 총액 신고 및 소득세 신고에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7」

17 운영비(200관) > 업무추진비(220항) > 회의비(223목)

회의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200 운영비	220 업무 추진비	223 회의비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100,000원 × 4회 • 학부모회의 50,000원 × 4회 • 교사회의 50,000원 × 6회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회의비를 지출할 때는 지출목적·일시·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함

FAQ

Q1

법인 회의 참석 시 소요되는 비용을 회의비로 지출할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운영관련 지출 외에는 회계 처리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8조의2(목적외 사용금지)]

유의사항

- 회의비를 지출할 경우 지출 목적, 일시, 대상 등 명확한 용처의 사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7」

18 보육활동비(300관) > 기본보육활동비(310항) > 교직원연수·연구비(311목)

교직원연수·연구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300 보육 활동비	310 기본 보육 활동비	311 교직원 연수· 연구비	• 직무교육비(보조) 80,000원 × 2명 × 1회 • 심폐소생술 교육 30,000원 × 15명 × 1회 • 생태교육 연수비 250,000원 × 4회 • 몬테소리 연수비 500,000원 × 2회

-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장, 보육교사 등 모든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연수·연구비
 - 개인 학위과정 경비는 원칙적으로 개인이 부담하되,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위과정에 대한 학비는 어린이집 회계에서 지출 가능
- 연수나 연구 활동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원되는 경비
- 학위취득과정의 경우 어린이집(또는 어린이집 단체)과 대학(원)간 계약 체결된 학과에 한함
 -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등 “계약학과” 관련 규정 준수
- 전공학위 과정(학과)은 영유아 보육과 관련되어야 하고, 동 교육경비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예산 범위 내 인정
- 원장 및 교사 등 보육교직원 모두가 학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 및 비용 등에 대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보고 및 승인 필요
 - ※ 내부규정에 근거가 있고, 보육교사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 필요

FAQ

Q1

원장 및 보육교직원 비대면(zoom) 교육비는 교직원 연수·연구비로 지출할 수 있나요?**A** 교직원 연수·연구비로 지출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7]

Q2

어린이집에서 근무하고 있는 원장, 보육교사 등 모든 보육교직원의 대학원 학비를 운영비에서 지출할 수 있나요?**A** 개인 학위취득과정 경비는 개인부담이 원칙입니다. 다만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재교육 및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학위 과정에 대한 학비는 어린이집 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인정조건의 경우, 어린이집(또는 어린이집 단체)와 대학(원)간 계약 체결된 학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법률」 등 “계약학과” 관련 규정 준수)전공학위 과정(학과)은 영유아보육과 관련되어야 하고, 동 교육경비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끼치지 않는 예산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장 및 교사 등 보육교직원 모두가 학위 과정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가 보장되어 있어야 하며, 운영 및 비용 등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승인 및 보고가 필요하고 근거가 되는 내부규정과 보육교사에게 사전에 충분한 정보 제공이 필요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7]

유의사항

- 어린이집 운영시간 내에 강의를 이루어지는 일반대학원 학위취득 과정의 학비가 어린이집 운영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7」

19 보육활동비(300관) > 기본보육활동비(310항) > 교재·교구 구입비(312목)

교직원연수·연구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300 보육 활동비	310 기본 보육 활동비	312 교재· 교구 구입비	- 영유아 교재·교구비 7,000원(이상) × 73명 × 12개월 - 교재·교구비(시간제) 7,000원(이상) × 3명 × 12개월 - 누리반 교재·교구비(누리지원금) 20,000원 × 58명 × 12개월 - 교재·교구비(장애통합 보조) 21,000원 × 3명 × 12개월 - 조합놀이대(교재교구보조) 1,000,000원 × 1회 - 도서구입 100,000원 × 7반 × 12개월 - 도서구입(시간제) 100,000원 × 1반 × 12개월 - 안전교육자료(OO기업도서후원금) 2,000,000원 × 1회

- 보육 기자재, 도서 등 구입 및 제작비

FAQ

Q1

아동 인원 수 변동에 따라 교재·교구비 예산도 함께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A 예산 편성 시 세입의 예산 기준 아동 인원수와 세출의 기준 아동 인원수를 일치하여 편성해야 하므로 세입 세출예산 편성 시 아동 인원수에 맞게 교재·교구비 구입 비용을 반영하여 편성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보육사업안내(부록) p.6]

Q2

아동 인원 수 대비 교재·교구비를 편성할 때 지자체 지원금을 포함해서 편성해야 하나요?

A 보육료는 인건비, 교재·교구비, 급·간식재료비, 관리운영비(난방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사무용품비 등)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에서 연간 지원하는 교재·교구비의 경우 세출 예산 교재·교구비(312목)에 운영비 지출 분과 지자체 지원금을 합산 편성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근거: 보육사업안내(본문) p.91, (부록) p.46]

유의사항

- 각종 소모품 지출 비용이 교재·교구비로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교재·교구비 지출 비용이 적정한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함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20 보육활동비(300관) 기본보육활동비(310항) 행사비(313목)

행사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300 보육 활동비	310 기본 보육 활동비	313 행사비	• 식목일 행사 5,000원 × 73명 × 1회 • 식목일 행사(시간제) 5,000원 × 3명 × 1회 • 김장 담그기 행사 5,000원 × 73명 × 1회 • 김장 담그기 행사(시간제) 5,000원 × 3명 × 1회 • 산타잔치 행사 10,000원 × 73명 × 1회 • 산타잔치행사(시간제) 10,000원 × 3명 × 1회 • 명절행사(추석, 구정) 10,000원 × 73명 × 2회 • 명절행사(추석, 구정)(시간제) 10,000원 × 3명 × 2회 • 데이데이 행사 50,000원 × 7반 × 12회 • 데이데이 행사(시간제) 50,000원 × 1반 × 12회 • 부모참여 300,000원 × 4회 • 부모교육 300,000원 × 4회 • 부모상담(상·하반기) 100,000원 × 2회 • 열린어린이집 월중 행사 100,000원 × 12회 • 현장학습 시 보육교직원 입장료 10,000원 × 14명 × 10회

-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 행사 경비
 - 보육과정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 부모 관련 행사도 지출 가능
- 입학식, 체육행사, 전시회, 발표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어린이집에서 부담하는 일체의 경비

FAQ

Q1

부모참여 수업 시 소요되는 비용을 행사비(313목)로 지출할 수 있나요?

A '25년 보육사업안내에 따르면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각종행사 경비로 보육과정과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부모관련 행사도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참여 수업의 경우 보육과정 내 연간 행사계획을 계획했다면 행사비(313목)로 지출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8]

Q2

부모교육 강사료는 계정과목이 무엇인가요?

A 보육과정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부모교육 강사료의 경우 보육활동비의 행사비(313목)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8]

유의사항

- 보육 주제에 맞춰 진행되는 행사 비용은 행사비(313목)로 지출하되, 관련 증빙서류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8」

21 보육활동비(300관) > 기본보육활동비(310항) > 영유아 복리비(314목)

영유아 복리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300 보육 활동비	310 기본 보육 활동비	314 영유아 복리비	• 과잉행동 검사비 3,000원 × 73명 × 2회 • 요충 검사(보건소연계) 2,000원 × 73명 × 1회

- 영유아 건강 및 안전 관련 비용(건강검진 비용 등)
- 전체 영유아를 대상으로 지출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22 보육활동비(300관) 기본보육활동비(310항) 급식·간식재료비(315목)

급식·간식재료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300 보육 활동비	310 기본 보육 활동비	315 급식· 간식 재료비	• 영아 급간식비(보조포함) 2,800원 × 15명 × 22일 × 12개월 • 유아 급간식비(보조포함) 4,200원 × 58명 × 22일 × 12개월 • 보육교직원 급간식비 4,200원 × 15명 × 22일 × 12개월 • 교사 급·간식비(보조) 25,000원 × 6명 × 12개월 • 보육실습생 급간식비 2,500원 × 1명 × 30일

-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 재료 구입비 및 간식비
 - * 복리후생비(216목)의 '급량비'는 보육교직원의 야간근무 시 소요되는 경비로 구분
- 보육아동의 건강과 영양을 고려하여 아래 기준에 따라 집행하도록 노력해야 함
 - 아동 1인당 적정 수준의 비용을 지출해야 함. 이는 최소 1,900원 이상으로 시·군·구에서 시설별·지역별·보육아동 구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
 - * 1,900원('19년 표준보육비용), 2,300원('24년 표준보육비용)
 - 다만, 누리과정의 경우 2,500원 이상으로 어린이집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 2,500원('19년 표준보육비용), 3,700원('24년 표준보육비용)
 - 위의 비용은 조리원(조리사) 인건비 등을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만을 의미하는 것임(인건비 및 수용비 등은 별도)
- 급식은 어린이집 내에서 직접 조리하되 불가피할 경우 그 사유와 대안을 마련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
-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에는 세입 처리해야 함

FAQ

Q1

현장학습비를 수납하였습니다. 현장학습 시 점심식사를 외부 음식으로 제공하는 경우 지출 계정 과목이 무엇인가요?

A 급식은 직접 조리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장학습 등 어린이집에서 직접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학부모에게 급식(외부음식) 제공에 대해 미리 고지·안내하여 학부모 서면 동의(키즈노트나 알림장 등)를 받는 경우에는 직접 조리 제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현장학습 시 점심 비용은 지출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47]

Q2

급식·간식재료비 중 지자체에서 현물로 친환경 쌀을 지원할 경우 회계 처리해야 하나요?

A 현물로 지원되는 친환경 쌀 등 농산물은 어린이집 회계(예산편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교사 급식비를 별도로 수납하고 있습니다.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해도 되나요?

A 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으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 봉급대장에서 공제하는 것이 아닌 운영비 통장으로 세입처리(그 밖의 잡수입)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8]

유의사항

- 어린이집 간식을 어린이집에서 직접 조리하지 않고 외부음식이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함(학부모 서면 동의 시 가능)
- 식단표에 없는 식자재 구입에 지출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어린이집 급식·간식재료비 지출 시 지자체 지원금을 합산한 금액으로 지출되고 있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함
- 현장학습 시 영유아, 보육교직원 점심 비용은 보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되는 행사이므로 학부모에게 현장학습비를 수납하지 않았을 경우 외부에서의 식사 비용은 급식·간식재료비(315목)로 지출해야 함

✓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관련[별표8]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8」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23 수익자 부담경비(400관) > 선택적 보육활동비(410항) > 특별활동비 지출(411목)

특별활동비 지출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400 수익자 부담 경비	410 선택적 보육 활동비	411 특별 활동비 지출	• 영어(2세) 18,000원 × 7명 × 12개월 • 체육(2세) 10,000원 × 7명 × 12개월 • 로봇과학(3세 이상) 25,000원 × 55명 × 12개월 • 영어(3세 이상) 20,000원 × 55명 × 12개월 • 체육(3세 이상) 10,000원 × 55명 × 12개월

-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등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에 의해 어린이집 내·외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어린이집 원장은 시도지사가 정한 특별활동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
- 어린이집에서 특별활동비를 부모로부터 수납하지 않고 특별활동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특별활동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교재·교구비는 특별활동비 지출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해당 계정과목에 따라 기장

예시

- 교재·교구비 → “(300)보육활동비- (310)기본보육활동비- (312)교재·교구 구입비”
- 특별활동 강사비 → “(200)운영비- (210)관리운영비- (211)수용비 및 수수료”에 기장
 - * 특별활동 강사는 보육교직원이 아니므로, 인건비가 아닌 수용비에서 지출

FAQ

Q1

직장 위탁보육료의 지출 처리 시 전입금 지원대상자의 특별활동비 기타 필요경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 직장어린이집 위탁비용은 별도계정(전입금)으로 관리하며, 위탁 보육은 위탁 보육에 따른 필요경비 및 특별활동비 등 부모 부담 분을 우선 회계처리하고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 보육교사 인건비 및 운영비로 충당해야 합니다.(다만, 전출금으로 충당 금지) 따라서 위탁보육료는 전액 전입금(411목) 계정으로 세입 처리하고 세출은 수익자 부담경비(특별활동비 지출, 기타 필요경비 지출)로 지출하도록 합니다. 다만,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상 전입금의 지출 분임을 부기하여 작성해야 합니다.(연계편성 예외)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8]

Q2

특별활동비를 납부하고 실제 참여하지 않은 아동의 특별활동비 반환금액은 무슨 계정에서 처리하나요?

A 특별활동비에서 반납결의 합니다.[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12]

유의사항

- 특별활동비 지출 시 학부모가 해당 업체로 직접 비용을 결제하지 않도록 해야 함
- 특별활동비 상한액을 초과하여 수납받는 일부 금액을 특성화비용으로 회계처리하지 않도록 주의
※ 외부강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활동의 수익자 부담금은 특별활동비, 내부 보육교직원이 실시하는 프로그램의 개인용 교재교구비는 특성화비용에 해당
- 특별활동비 청구 시 항목별(과목별)로 금액을 명시해야 함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94-95」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24 수익자 부담경비(400관)› 기타 필요경비(420항)› 기타 필요경비 지출(421목)

기타 필요경비 지출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400 수익자 부담 경비	420 기타 필요 경비	421 기타 필요 경비 지출	• 입학금 선수납 이월금 90,000원 × 1명 × 1회 • 입학준비금 90,000원 × 9명 × 1회 • 체육복 재구입 25,000원 × 5명 × 1회 • 전자태그구입(분실) 5,000원 × 3명 × 1회 • 차량운행비 30,000원 × 20명 × 12개월 • 현장학습비(장애아, 만2세 이상) 50,000원 × 65명 × 4회 • 행사비(장애아, 만0세 이상) 80,000원 × 73명 × 1회 • 야간연장 석식 30,000원 × 5명 × 12개월 • 지자체특성화비(만2세 이상) 20,000원 × 62명 × 12개월

-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 지출
- 입학준비금: 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현장체험학습, 수련회, 견학활동)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에 해당

※ 다만, 장소가 어린이집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이루어지더라도 통상적인 보육프로그램 또는 특별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외부업체 주관의 체험학습을 진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장학습비로 포함
- 차량운행비: 기사 인건비, 유류비, 수리비, 부품구입비 등으로 직접 지출 가능. 다만 차량 운행은 어린이집 필요에 의하여 통학서비스 제공을 위한 취지이므로 보육직원 인건비(120항)에서 기사 인건비를, 차량비(215목)에서 인건비 외 차량관련 경비 등을 우선 집행 권고
- 부모부담 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종교행사 등), 명절 등 연 12회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해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다만, 생일은 영유아를 기준으로 1회를 의미

* 2023년 회계연도부터 적용

- 그 외 행사와 관련된 경비는 행사비(313목)에서 지출

- 아침·저녁 급식비: 아침 및 저녁 급식비

※ 연장보육료에는 급식·간식 비용 미포함(연장보육 시간에는 급식·간식 제공 의무 없음. 단, 학부모와의 상의를 통해 급식·간식 제공 시 필요경비 수납 가능)

- 기타 시·도 특성화 비용(필요시): 통상적인 연령별 보육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보육교사가 진행할 경우 필요한 개인용 교재교구비

- 대상연령, 운영시간 등 일반적인 운영규정은 특별활동을 준용

- 개인용 소모품: 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 예시) A4용지, 파일, 풀, 가위, 색종이, 스케치북, 크레파스 등은 기본보육과정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시설(어린이집)에서 부담

- 다만, 표준보육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영유아의 개인용 소모품은 보호자 협의 하에 현물로 받을 수 있음

필요경비 집행 및 정산

- 어린이집의 원장은 필요경비 수납액을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

- 입학준비금 반환

-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했으나 입학 전에 취소를 하거나 입학 후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 반환

- 단, 어린이집 입소원서를 제출하고 입학 이후 취소하는 경우에는 물품 지급여부,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처리

-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함

※ 실 사용금액은 해당 건별 금액으로 정산 가능(남은 금액은 개인별 정산)

- 반기별로 기타 필요경비(221목) 총 수납액의 일정비율(14% 이내)을 일반관리비로 인정하여 관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음

FAQ

Q1

기타 필요경비 86% 사용 후 수납한 금액의 14% 이내 사용금액은 기타 필요경비 지출 계정으로 변경해야 하나요?

A 해당 지자체의 규정을 확인하여 구분하되, 기타 필요경비지출로 구분된 관리운영비 14% 이내 사용금액의 경우 정산서상 별도 해당 내용을 기록하여 14%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96]

Q2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 세목별로 정산해야 하나요?

A 기타 필요경비의 경우,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부모부담행사비, 차량운행비, 아침·저녁 급식비, 기타 시·도 특성화비 등 세목별로 입력, 정산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96]

Q3

지자체 특성화비 비용을 부모에게 수납하지 않고 원 운영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 지출되는 특성화 교재비는 어느 항목으로 구분하나요?

A 기타 필요경비 중 특성화비의 비용을 부모에게 수납하지 않고 운영비로 지출할 경우 교재 구입 비용은 교재·교구비 구입비(312목)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98]

Q4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 보육사업 안내에서 명시하지 않은 별도 비용을 수납받을 수 있나요?

A 시·도지사가 정한 필요경비의 세부내역 이외의 잡부 금품을 수납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96]

유의사항

- 필요경비는 반기별로 보호자별 수납액, 실 사용금액, 남은 금액을 정산하여 그 내역을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에 보고하거나 보호자에게 알려야 하며 필요경비 수납액은 원래의 목적에 한하여 집행해야 함
- 입학준비금(피복구입비, 상해보험료, 전자출결태그비용)은 학부모 동의서를 구비하여야 함
- 개인용 소모품(표준보육과정에 필요한 개인소모품)은 원칙적으로 수납 불가
- 총계정원장상 기타 필요경비지출(부모부담행사비)의 행사내역이 운영위원회 회의록 상 (사전 또는 연초) 결정된 항목의 지출인지 확인 필요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93-98」

25 적립금(500관) > 적립금(510항) > 적립금(511목)

적립금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500 적립금	510 적립금	511 적립금	• 적립금 300,000원 × 12개월

-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 개·보수나 통학 차량구입 등 시설의 안정된 기관 운영 및 시설환경 개선을 위해 상당한 지출이 소요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계획을 수립한 후 정기적금 등에 가입하여 별도 통장 적립 가능
 - ※ 토지, 건물 등 시설의 자산증식을 위한 목적으로의 적립금 적립은 불가
-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 사전 보고
 - * 시군구에서 보고 시기, 보고 방법 등을 별도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로 규정하는 사항이 없다면 예산을 제출할 때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보고하고, 사용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고
- 적립금(511목)은 그 규모가 과다할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총 보육료 수입*의 일정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해야 함(당해연도 기준)
 - * 총 보육료수입 = 정부지원보육료(111목)+부모부담보육료(112목)+기관보육료(321목)+연장보육료(322목)
 - ※ 적립금 적립 시,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상환(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합이 총 보육료 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적립금 적립과 동시에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지출 가능 범위 내에서의 상환은 허용
- 매년 결산 시 잔액증명서 등 적립금 현황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자체에 보고
 - 결산 보고 시, '세입·세출 결산 총괄설명'에 전 회계연도 적립액, 당 회계연도 적립액, 인출액 및 누적 적립액 등을 반드시 기재하여 보고
- 별도 통장에 적립된 누적 적립금을 어린이집 세입·세출 예산에 계상하지 않아야 함
 -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만기 등으로 인해 실제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 처리 시에만 '적립금 처분 수입(611목)' 세입 예산에 반영하여 목적에 따라 계정과목으로 지출
- '17. 3. 1. 이후 적립하는 적립금은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 원금 손실 우려가 적은 금융상품에 한하여 적립(보험상품은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만기 이전 적립목적 사유 발생 시 현금화가 가능한 상품에 한함)

'17. 3. 1. 현재 적립 중 보험상품에 대한 적용례

- * '17. 2. 28. 이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되고 적립금으로 1회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정한 납입기한까지, 해당 보험상품의 계속 보험료 납입 방식으로 적립금의 적립을 허용
- 납입기간의 연장, 납입 금액의 증액 그 밖의 보험계약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 단, 원금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만기 이전 적립목적 사유 발생 시 현금화가 가능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납입기간 연장 등 계약 변경 가능

FAQ

Q1

추경 시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하여 현재 적립하던 적립금 금액을 상향할 수 있나요?

A 적립금은 적립금의 사용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 그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적립금 금액을 기존 적립액보다 상향 적립할 경우 적립금의 사용계획서를 재수립하여 지자체에 보고 후 적립할 수 있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적립금의 그 규모가 과도할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총 보육료 수입의 일정 범위 내(15%)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0]

Q2

시설 개·보수나 통학차량 구입을 위해 적립을 하고 싶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적립금은 시설 개·보수나 통학차량 구입 등을 위해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금의 사용계획서는 사전에 지자체에 보고하고 정기적금 등 어린이집 명의의 별도 통장에 적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10, p60]

Q3

현재 정원충족률이 60%로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존에 적립하고 있던 적립금을 해지하여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나요?

A 적립금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시설 개·보수나 통학차량 구입 등의 안정된 기관 운영 및 시설 환경 개선을 위해 적립하는 비용으로 적립금을 사용하거나 만기 등으로 인해 사용할 경우는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으로 입금한 후 세입예산과목 '적립금처분수입(611목)'에 반영하고, 사용 목적에 따라 세출 예산(해당 계정과목)에 편성하여 지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당초 지자체에 보고한 사용계획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사용목적 변경계획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0]

유의사항

- '17년 3월 1일 이전에 적립금을 보험형에 가입한 시설은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어린이집 명의로 관리하고 만기 시 적립금 처분수입으로 세입 처리하여 사용계획서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함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85」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0-61」

26 상환·반환금(600관) > 차입금 상환(610항) > 단기차입금 상환(611목)

단기차입금 상환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600 상환· 반환금	610 차입금 상환	611 단기 차입금 상환	- 단기차입금 (OO은행, 원금) 2,000,000원 × 1회 - 단기차입금 (OO은행, 이자) 6,670원 × 12개월

-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 세입 예산의 단기차입금(421목)과 연계하여 원금과 이자 지출 가능
- 차입금은 당해연도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자격, 규모, 용도 등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거쳐 1회계연도에 한하여 상환 연장 가능

FAQ

Q1

'24년도 단기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지자체 승인으로 '25년도에 단기차입금을 상환하려고 합니다. 예산 편성 시 단기차입금 상환만 편성해도 되나요?

A 단기차입금의 경우 당해연도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회계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자격, 규모, 용도 등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을 거쳐 1회계연도에 한하여 상환 연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당해연도에 상환되지 못한 단기차입금의 경우 지자체 승인을 거쳐 다음연도 세출 예산 단기차입금 상환에 예산 편성하고 집행이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1]

Q2

운영비 부족으로 인건비 지출이 어려워 지인으로부터 차입을 하였습니다. 원금 외 이자를 지출할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일시적으로 운영비가 부족하여 차입금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을 비롯한 개인으로부터의 차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자 지출 시 제1금융권 대출 금리를 준용하여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의 액수와 용처, 계좌이체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는 증빙자료를 시설 내 비치하여야 합니다.(차용증, 단기차입금 관리대장)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0, p.61]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유의사항

- 단기차입금은 연도 내 상환 시 지자체 보고·승인없이 차입하여 사용할 수 있음. 다만,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상환하는 경우(1회계연도에 한함)에는 자격, 규모, 용도 등에 대한 해당 지방자치 단체의 사전 승인을 거쳐야 함
- 원장이나 대표자 이름의 세입 금액은 전입금으로 보기 때문에 단기차입금으로 상환이 불가함
-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49-50, 61」

27 상환·반환금(600관) > 차입금 상환(610항) > 장기차입금 상환(612목)

장기차입금 상환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600 상환· 반환금	610 차입금 상환	612 장기 차입금 상환	• 장기차입금 (OO은행, 원금) 300,000원 × 12개월 • 장기차입금 (OO은행, 이자) 59,250원 × 12개월

- 어린이집 운영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개·보수 등이 필요할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회계연도를 달리하여 상환 가능한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 세입 예산의 장기차입금(422목)에 따라 원금과 이자 지출 가능
- 장기 차입금으로 인해 당해연도 인건비 및 운영비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
- 적립금 적립과 동시에 장기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지출 가능 범위 내에서의 상환은 허용
 - ※ 장기차입금 상환 시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 상환(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합이 총 보육료 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장기차입에 대한 상환기간(거치기간 제외)은 5년(회계서류 보존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하며, 매년 결산보고 시 장기차입금 상환 내역을 첨부하도록 함
 - * 부득이 상환기간을 초과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보존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상환기간 연장 가능

-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 금융기관으로부터 정책융자금을 장기차입 받은 경우에는 '17.3. 1일 이전 일지라도 융자금이 남아있는 경우 상환 인정(단, 토지 매입 등 실질적인 개인 자산 투자부문은 제외)

FAQ

Q1

환경개선 융자금으로 대출 승인받아 장기차입금으로 총 보육료 수입의 15% 이내에서 이자, 원금을 상환해야 하나요?

A 환경개선 융자금은 장기차입금 상환으로 원금과 이자 지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타운영비, 적립금, 장기차입금상환, 차량 할부금의 합이 총 보육료 수입의 15% 이내로 지출해야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2]

Q2

장기차입금 상환 5년 기간이 만료가 되었지만 모두 상환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상환하지 못한 장기차입금은 기간을 연장하여 상환할 수 있나요?

A 장기차입은 거치 기간을 제외하고 5년 내에 상환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환연도 5년을 초과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상환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관련 증빙서류 보존). 따라서 상환 기간을 연장한 후 다음 연도에 상환할 수 있습니다.(매년 결산보고 시 장기차입금 상환 내역 첨부)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2]

Q3

장기차입금을 어린이집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사용해도 되나요?

A 장기차입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조달을 원칙으로 하며, 마이너스 통장(대출) 등 대출 금리가 높은 상품으로 장기차입은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 사업안내(부록) p.50]

Q4

어린이집을 증축하려고 합니다.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공사인데 장기차입금을 사용 가능한가요?

A 토지, 건물 등 시설의 자산 증식(신·증축)을 위한 목적으로는 장기차입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0]

유의사항

- 적립금 적립과 동시에 장기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되, 지출 가능 범위 내에서의 상환은 허용됨
- '17년 3월 1일 이전 정책융자금을 받은 시설 중 개인 기상환 금액을 소급 적용 하여 운영비에서 지출되지 않도록 해야 함
-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1-62」

28 상환·반환금(600관) > 반환금(620항) > 보조금 반환금(621목)

보조금 반환금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600 상환· 반환금	620 반환금	621 보조금 반환금	• 1년 미만 퇴직적립금 반환금(연장전담교사) 25,610원 × 11개월

- 정부 보조금 미사용분에 대한 반환금

FAQ

Q1

'24년 회계연도 중 지원을 받았던 보조금 중 미사용분에 대한 보조금을 '25년도에 반환하였습니다. 과년도 지출로 구분해야 하나요?

A 보조금에 대한 반환은 귀속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보조금 반환금 계정으로 구분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2]

Q2

'24년 근무한 보육교직원(인건비 국고보조대상 근로자)의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 반환금을 '25년 회계연도에 반환하려고 합니다.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A 보조금에 대한 반환은 귀속연도를 구분하지 않고 보조금 반환금 계정으로 구분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2]

유의사항

- 인건비 국고보조 대상 근로자의 1년 미만 퇴직자의 퇴직금 반환금은 회계연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반환되어야 함
-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334」

29 상황·반환금(600관) > 반환금(620항) > 보호자 반환금(622목)

보호자 반환금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600 상황· 반환금	620 반환금	622 보호자 반환금	• 특별활동비 정산 반환금 2,000원 × 62명

-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및 필요경비 수납한도액 등 위반으로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또는 필요경비 정산에 따라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FAQ

Q1

2월 말에 필요경비 반기별 정산을 하였습니다. 3월에 운영위원회 보고를 통하여 학부모에게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계정과목으로 해야 하나요?

A 필요경비 정산에 따라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은 보호자 반환금(622목)으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2]

Q2

당초 수납해야 하는 특별활동비보다 과다금액으로 납부한 학부모에게 반환한 금액은 보호자 반환금으로 구분 하나요?

A 과오납에 대한 반환은 보호자 반환금이 아닌 세입 계정에서 직접 반납처리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12]

유의사항

- 보호자 반환금으로 지출된 금액은 전년도 필요경비 정산분에 해당 지출 내역이 반영되어야 함
※ 어린이집에서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등 수납 시 반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납액 결정 권고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2」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30 상황·반환금(600관) > 반환금(620항) > 법인회계 전출금(623목)

법인회계 전출금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600 상황· 반환금	620 반환금	623 법인회계 전출금	법인회계 전출금 2,000,000원 × 1회

- 사회복지법인 등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
 - 단, 법인에서 지원한 전입금과 연계하여 지출

FAQ

Q1

위탁보육비용을 필요경비로 사용하고 일부 남은 금액이 발생하면 전출금으로 지출 가능한가요?

A 위탁보육비용에 대한 잔액이 발생하면 인건비 등 운영비로 사용합니다. 따라서, 전출금으로는 지출이 불가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본문) p.8]

31 재산조성비(700관) > 시설비(710항) > 시설비(711목)

시설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700 재산 조성비	710 시설비	711 시설비	- 놀이터 공사비용(기능보강비) 5,000,000원 × 1회 - 어린이집 외부건물 개·보수비(장기차입) 18,000,000원 × 1회

- 어린이집 시설의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에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비

FAQ

Q1

소방설비, 전선교체 등 어린이집 전체 공사를 하였습니다. 지출 시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A**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비의 경우 시설비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21]

Q2

미세먼지 방진망 설치비용 70만원을 자본보조금으로 지원받았습니다.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A** 환경개선지원금으로 지원받은 보조금은 세입예산의 자본보조금(331목)으로 예산편성 후 세출예산의 시설비(711목)로 연계편성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18, 21]

Q3

어린이집 도배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A** 환경개선을 위한 개·보수비이므로 시설비(711)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21]

유의사항

- 어린이집에서 시설 개·보수 등을 진행한 경우 공사 관련 장부 및 증빙서류(사업계획서, 공사 전·후 사진, 견적서(비교견적 포함),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를 10년 간 보존해야 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필수 설치 구역에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함
- CCTV 영상정보 보존기간은 60일 이상 보관해야 함

✓ 적용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어린이집의 설치 기준 등)관련 별표1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3(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32 재산조성비(700관) 시설비(710항) 시설장비 유지비(712목)

시설장비 유지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700 재산 조성비	710 시설비	712 시설장비 유지비	• CCTV수리비용 200,000원 × 1회 • 어린이집 건물 외벽 물청소 비용 800,000원 × 1회

-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의 유지를 위한 수선경비

FAQ

Q1

소방시설이 노후되어 수선했을 경우 시설장비 계정과목이 무엇인가요?

A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의 유지를 위한 수선경비의 경우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21]

Q2

에어컨 실외기에 대한 부품교체와 수리비가 발생할 때 계정과목이 무엇인가요?

A 시설, 장비 및 물품 등의 유지를 위한 수선경비의 경우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21]

Q3

어린이집 전체 시스템 에어컨 클리닝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A 시설장비의 유지를 위한 비용으로 시설장비 유지비(712목)로 구분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21]

유의사항

- 공사비용 등을 시설장비 유지비로 구분되지 않도록 해야 함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21」

33 재산조성비(700관) > 자산구입비(720항) > 자산취득비(721목)

☞ 자산취득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700 재산 조성비	720 자산 구입비	721 자산 취득비	• 보존식 냉동고 구입비(자본보조) 700,000원 × 1대 • 열화상 카메라 구입비(자본보조) 2,000,000원 × 1대 • 차량 일시 구입비(적립금) 20,248,600원 × 1대 • 차량 할부금 540,800원 × 12개월

● 어린이집 통학차량, 의자 및 책상, 사무용기기 등

※ 차량을 할부로 구입 시,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상환(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 721목)의 합이 총 보육료 수입의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

● 어린이집 명의의 차량에 대해 자산취득비로 차량할부금 지출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대표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어린이집 명을 부기할 수 있도록 조치

※ 법인 외 어린이집으로 차량명 부기가 불가한 어린이집인 경우 차량을 도로교통법 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 후, 어린이집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관리함

🗨️ FAQ

Q1

수용비 및 수수료와 자산취득비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소모성 물품의 경우 수용비 및 수수료,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품으로 내구 연한 1년 이상의 물품의 경우 자산취득비로 구분합니다.

Q2

어린이집 통학차량을 할부로 구입하고 운영비로 매월 할부금을 지출할 수 있나요?

A 어린이집 명의의 차량에 대해 자산취득비로 차량할부금 지출이 가능하며, 부득이하게 대표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한 경우 어린이집 명을 부기하고, 법인 외 어린이집으로 차량명 부기가 불가한 경우 차량을 도로교통법 52조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로 등록 후, 어린이집 재산목록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합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2]

유의사항

• 법인의 대표이사과 시설의 장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재물조사(정기 재물조사 외에 수시로 재물조사)를 실시해야 함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14」

34 과년도 지출(800관) > 과년도 지출(810항) > 과년도 지출(811목)

과년도 지출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800 과년도 지출	810 과년도 지출	811 과년도 지출	• '24년 공사 미불금 6,560,000원 × 1회 • 2월분 사회보험료 미지출금 3,335,740원 × 1회

- 과년도 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 중 당해연도 지출

FAQ

Q1

사회보험료를 매월 말일로 운영비 계좌에서 자동이체하고 있습니다. 2월 말일이 공휴일로 인하여 3월 2일에 자동이체가 되었는데 어느 항목으로 구분해야 하나요?

A

2월분 사회보험료의 경우 예산편성 시 당해연도 임금을 기준으로 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2월분 사회보험료가 다음달 10일이나 2월 말일이 휴일인 경우 해당 사회보험료는 과년도 지출로 구분합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매해 발생하는 2월분 사회보험료의 경우 4대보험(예수금 통장)을 통해서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1회계연도에 속하는 시설의 세입·세출의 출납은 회계 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하고 당해회계연도 지출은 2월 말까지 출납 마감기한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5」

35 잡지출(900관) 잡지출(910항) 잡지출(911목)

잡지출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900 잡지출	910 잡지출	911 잡지출	• 원단위 절사금 5원 × 1회

- 보상금·사례금·소송경비 및 원 단위 절사금 등

36 예비비(1000관) 예비비(1010항) 예비비(1011목)

예비비

과목			산출기초(예시)
관	항	목	
1000 예비비	1010 예비비	1011 예비비	• 예비비 2,387,544원 × 1회

-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을 위해 편성한 예산
- 예비비의 경우 '업무추진비(220항)'로 지출 불가
- 예비비는 편성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편성할 경우 총 세출예산의 2% 이내의 금액으로 편성해야 함

FAQ

Q1

예비비 편성 시 예산총액의 1%만 편성해도 되나요?

- A** 어린이집 원장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예비비 편성 시 2%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비비는 업무추진비로는 지출 할 수 없습니다. [관련근거: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64]

유의사항

-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 결산서 제출 시 예비비 사용조서가 첨부되어야 함



관련규정

- 「'25년 보육사업안내(부록) p.10」

I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II

어린이집 회계관리

III

예산과목별 처리 방법
어린이집 재무회계

IV

부록



2025

어린이집
재무회계
매뉴얼



CHAPTER

IV

부록

어린이집 재무회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예산편성 및 집행 자가진단지
- 결산 자가진단지

IV

부록

어린이집 재무회계 자체점검 체크리스트

● 예산편성 및 집행 자가진단지

항목	세부내용	진단하기		비고
		적합	아니오	
I. 회계 관리				
필수 점검 사항	1. 연간 어린이집 사업계획 및 어린이집 운영현황을 반영하여 예산을 작성하고 집행하였다. (총계주의원칙, 목적 외 사용 금지원칙)	☐	☐	
	2.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 및 지출은 어린이집 명의의 통장에서 관리하고 있다.	☐	☐	
	3. 예·결산서를 제출 시기를 준수하여 보고하고 있다.(회계 연도 독립의 원칙) (본예산 회계연도 개시 5일전, 추경 예산: 확정 후 7일 이내, 결산 5월31일)	☐	☐	
	4. 예·결산서를 어린이집 정보공개포털에 게시하고 있다. (공개의 원칙)	☐	☐	
	5. 필요경비(특별활동비 및 기타 필요경비)를 반기별로 정산하여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또는 학부모에게 보고하고 있다.	☐	☐	
II. 예산 편성 (예산 편성, 추경 편성 시 점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1. 세입 예산	1 <보육료> 시·도지사가 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수납기준을 준수하여 연령별 아동인원수를 적정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	☐	☐	
	2 <특별활동비> 시·도지사가 정한 월별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세입 대비 세출 예산을 연계 편성하고 있다.(위탁보육료 수납 시 세입-세출 연계 편성 예외)	☐	☐	
	3 <기타 필요경비> 시·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을 준수하여 세입 대비 세출예산을 연계 편성하고 있다.	☐	☐	
	4 당해 연도에 지원되는 보조금을 확인하여 목적에 맞게 세입·세출예산을 연계 편성하고 있다.	☐	☐	
	5 2월 말 운영비 통장 잔액을 전년도 이월금으로 편성하고 있다.	☐	☐	
	6 미리 받은 입학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구분하여 기타 필요경비 선수납금으로 세입 예산 편성하고 있다.	☐	☐	

항목	세부내용		진단하기		비고
			적합	아니오	
2. 세출 예산	1	사업계획서의 보육교직원 현황 및 당해 연도 근로계약에 근거한 급여를 반영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	☐	☐	
	2	급여와 수당, 직책급을 반영하여 법정부담금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	☐	
	3	보육교직원 급여와 보육교직원 수당을 합산한 금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 ※ 고용 원장일 경우, 원장 직책급 포함 산정	☐	☐	
	4	기타운영비 외 지출 비용 ¹⁾ 은 총 보육료 ²⁾ 수입의 15% 이내로 편성하고 있다. 1) 기타운영비 외 지출비용: 기타운영비+적립금+장기차입금 상환액+차량할부금 2) 총 보육료 수입: 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기관보육료+연장보육료	☐	☐	
	5	지자체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	☐	
	6	교재·교구 구입비에 충분한 예산을 반영하여 편성하고 있다. ※ 교재교구비 지원 시, 지원금 추가 편성	☐	☐	
	7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을 급식·간식 재료비 예산에 편성하고 있다. ※ 지자체 급·간식비 지원 시, 지원금 추가 편성	☐	☐	
	8	차입금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	☐	
III. 예산 집행 (월 회계보고 시, 전 달의 회계장부로 점검) (건전재정 운영의 원칙)					
1. 수익자 부담 경비	1	시·도지사가 정한 월별 수납한도액과 수납주기를 준수하여 수납하고 있다.	☐	☐	
	2	〈특별활동비〉 세입 대비 세출예산을 연계 집행하고 있다. (위탁보육료 수납 시 세입·세출 연계편성 제외)	☐	☐	
	3	〈기타 필요경비〉 세입 대비 세출 예산을 연계 집행하고 있다. (위탁보육료 수납 시 세입·세출 연계편성 제외)	☐	☐	
2. 인건비	1	모든 보육교직원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다. (국공립 및 법인: 호봉 준수, 공공형: 국공립 1호봉 이상)	☐	☐	
	2	급여와 수당, 직책급을 반영하여 세액 공제 및 법정부담금을 지출하고 있다.	☐	☐	
	3	보육교직원 급여와 수당을 반영하여 퇴직금을 적립하고 있다. ※ 고용 원장일 경우, 원장 직책급 포함 산정	☐	☐	
3. 기타 운영비 외	1	기타운영비 ¹⁾ 가 총 보육료 수입 ²⁾ 의 15% 이내로 집행되고 있다. 1) 기타운영비: 건물임대료 또는 건물용자금 이자 2) 총 보육료 수입: 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연장보육료	☐	☐	

항목	세부내용		진단하기		비고
			적합	아니오	
4. 업무 추진비	4-1	지자체 관련규정을 준용하여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 있다.	☐	☐	
5. 보육 활동비	1	교재·교구 구입비에 충분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 ※ 지자체 교재교구 지원 시, 지원금 추가 집행	☐	☐	
	2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이 급식·간식 재료비로 집행되고 있다. ※ 지자체 급·간식비 지원 시, 지원금 추가 편성	☐	☐	
6. 차입금	1	장·단기차입금 지출 기준을 준수하여 집행하고 있다. ※ (단기차입금) 추경 예산 편성 집행, 연도 내 상황, 1회계연도 연장 시 지자체 승인 필요 ※ (장기차입금) 부채비율 50% 이내 포함, 총 보육료 수입의 5% 이내, 지자체 사전 승인, 거치기간을 제외하고 5년 내 상환	☐	☐	
7. 기부금	1	지정후원금, 비지정후원금의 수입 및 지출이 있을 경우 그 내역을 관리하여 결산보고 시 보고하고 있다.	☐	☐	
8. 적립금	1	적립금 적립 시, 지자체 사전 승인 받은 계획대로 집행하고 있다. ※ 사업계획 수립 후 지자체 사전 승인 필요	☐	☐	
IV. 결산 보고					
1. 결산 보고	1	세입결산서 내 수납액은 총계정원장 계정과목별 2월 말 누계액과 동일하게 반영하였다.	☐	☐	
	2	지출액 대비 잔액은 마이너스(△) 또는 과다잔액 없이 적절하게 지출하였다.	☐	☐	
	3	결산보고 절차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결산서를 제출하고 있다.	☐	☐	
V. 문서 관리 (월 회계보고 시, 전 달의 회계장부로 점검)					
1. 수입·지출 결의서	1	현금 수납 시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아동 개별명단으로 어린이집 운영비 통장에 입금 처리하고 있다.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	☐	☐	
	2	수입·지출 결의서의 '적요'란에 상세내용을 작성하고 있다.	☐	☐	
	3	예산과목별 수입 및 지출 처리 기준에 맞게 집행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하고 있다.	☐	☐	
2. 각종 대장	1	각종대장(비품대장, 공사대장, 봉급대장 등)을 회계서류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있다.	☐	☐	
	2	모든 보육교직원의 급여와 수당이 지급 기준에 따라 봉급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근로자에게 급여 명세표를 발급하고 있다.	☐	☐	

● 결산 자가진단지

세부내용	확인 결과		
	예	아니오	해당 없음
I. 수익자부담 적정 편성 및 관리			
1. <특별활동비> 특별활동비 수납액 대비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	☐	☐	☐
2. <기타 필요경비> 기타 필요경비 수납액 대비 지출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다.	☐	☐	☐
II. 인건비(관)의 관리 및 집행			
1. 근로자 급여를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고 있다. (국공립 및 법인: 호봉 준수, 공공형: 국공립 1호봉 이상)	☐	☐	☐
2. 예산 편성과 동일하게 급여와 수당이 지출 되었다. ※ 지출시 급여와 수당 구분	☐	☐	☐
3. 급여, 수당, 직책급에 대한 4대보험 총액 신고가 이루어지고 청구 자료에 맞는 (개인 산출내역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	☐	☐
4. 수당을 반영하여 퇴직금이 적립되었다.	☐	☐	☐
III. 기타운영비 등 적절 지출			
1. 기타운영비 외 지출* 비용이 총 보육료 수입의 15% 이내로 지출되었다. * 기타운영비 등 합계 = 기타운영비+적립금+장기차입금 상환액+차량 할부금	☐	☐	☐
IV. 교재·교구비 적정 지출			
1. 교재·교구 구입비에 세입예산서의 그 밖의 지원금(교재·교구비 보조금)을 포함해서 초과 지출되었다.	☐	☐	☐
V. 급식·간식 재료비 적정 지출			
1. 아동 1인당 적정수준의 비용이 급식·간식비 재료비로 지출되었다. ※ 지자체에서 급식·간식 재료비 지원 시, 급식·간식 재료비에 급식비 지원금 포함 필수	☐	☐	☐

2025 어린이집 재무회계 매뉴얼

발행일 2025년 4월

발행처 한국보육진흥원

전화번호 02)1661-5666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3,4,5,6층(서계동)04303

디자인·인쇄 (주)디자인여백플러스
